


의정활동보고서



제323회 임시회(2021. 4. 23 ~ 5. 6)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꽃향기가 가득하고 푸르름이 묻어나는 봄을 맞아
제323회 임시회를 시작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국내에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4차 대유행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방역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편함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계시는 우리 3백만 도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연초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우리의 권한과 함께 책임도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의회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명심하고 도민들의 불편함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더 시급히 요구되는 곳, 그리고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7월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 내년도 국비 확보 등 당면사항을 면밀히 잘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이

넘쳐나고 푸근한 정이 자라나는 뜻깊은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고 우 현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0
III. 의안처리		20
IV. 민원처리		21
V. 본회의 보고사항		23
VI.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29
☐ 임미애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29
☐ 김시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67
☐ 임무석 의원(농수산위원회)		92
VII. 5분 자유발언		102
☐ 이동엽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02

부 록

□ 조 례 안(30건)	107
□ 동 의 안(5건)	281
□ 결 의 안(1건)	297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323회 임시회는 2021년 4월 23일 13시4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월 6일까지 14일간의 회기 동안 2차 본회의와 9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2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4월 23일(금) 오후 13시 40분에 개의하여 세 분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한 후,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한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 등 39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였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을 처리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더 시급히 요구되는 곳, 그리고 불요불급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도민들의 불편함과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는 소중한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324회 제1차 정례회로 2021년 6월 10일(목) 오후 13시 40분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21년 4월 23일(금) 13:4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21년 4월 23일 ~ 5월 6일(14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144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1	1	3	1	1	1	1	1	2	-
누 계	769	63	101	91	78	71	74	81	103	107

※ 누계는 제11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4. 23(금) 13:40 (제1차)	☐ 안전처리 ○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임미애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김시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임무석 의원(농수산위원회)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의장제외)	
5. 6(목) 11:00 (제2차)	○ 5분 자유발언(이동업 의원) ☐ 안전처리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 ○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5. 6(목) 11:00 (제2차)	○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21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 ○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5. 6(목) 11:00 (제2차)	○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경상북도의회 김준열 의원 징계요구의 건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4. 23(금) 11:20 (제1차)	☐ 안전처리 ○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회의 건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기획경제위원회〉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4. 23(금) 11:00 (제1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4. 27(화) 10:30 (제2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대변인 소관)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청년정책관 소관)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4. 28(수) 10:00 (제3차)	☐ 안전처리 ○ 제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일자리경제실 소관) ○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전략산업국 소관)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의 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4. 26(월) 10:30 (제1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21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건강국 소관)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관 소관)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문화환경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4. 28(수) 10:00 (제1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농수산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4.28(수) 10:30 (제1차)	☐ 안전처리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 ○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4.28(수) 10:30 (제1차)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해양수산국 소관)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농축산유통국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4. 26(월) 10:00 (제1차)	□ 안전처리 ○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교육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4.29(목) 11:00 (제1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5. 3(월) 10:30 (제1차)	☐ 안전처리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경북도립대)·복지건강국 소관 •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충무민원실·동해안전락산업국·해양수산물국) 소관 •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5. 4(화) 10:30 (제2차)	☐ 안전처리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Ⅲ. 의안처리

구 분		접수 ㉠+㉢+㉣	처리 ㉠+㉢	의 결						철회 ㉢	계 류 ㉣	비고
				계 ㉠	가 결			부결	폐안			
					원안	수정	기타					
계		46 (796)	42 (770)	42 (767)	38 (718)	3 (48)	1 (1)	0 (0)	0 (0)	0 (3)	6 (26)	
조례안	소 계	34 (454)	30 (436)	30 (436)	28 (409)	2 (27)	0 (0)	0 (0)	0 (0)	0 (0)	4 (18)	
	의원발의	24 (330)	20 (313)	20 (313)	19 (298)	1 (15)					4 (17)	
	도지사제출	8 (88)	8 (88)	8 (88)	7 (78)	1 (10)						
	교육감제출	2 (36)	2 (35)	2 (35)	2 (33)	(2)					(1)	
	규칙안	0 (5)	0 (5)	0 (5)	(5)							
예산·결산		2 (33)	2 (33)	2 (33)	2 (18)	(15)						
동의·승인		6 (102)	5 (99)	5 (96)	4 (90)	1 (6)				(3)	2 (3)	
건의안		0 (4)	0 (4)	0 (4)	(4)							
결의안		1 (56)	1 (55)	1 (55)	1 (55)						(1)	
기타안		3 (141)	4 (138)	4 (138)	3 (137)		1 (1)				(3)	
청원		0 (1)									(1)	

※ ()안은 제11대(제301회~제323회)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11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1 (58)	(12)	(2)	(2)	(14)	(5)	(1)	1 (14)	(2)	(6)
의 회 운 영										
기 경 제	(10)	(1)	(1)	(2)	(3)		(1)	(1)		(1)
행 정 보건복지	(11)	(8)			(1)					(2)
문 화 환 경	(13)		(1)					(11)		(1)
농수산	(8)	(3)			(1)				(2)	(2)
건 설 소 방	1 (12)				(9)	(1)		1 (2)		
교 육	(4)					(4)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1 (58)	1 (58)				
의회운영						
기획경제	(10)	(10)				
행 정 보건복지	(11)	(11)				
문화환경	(13)	(13)				
농 수 산	(8)	(8)				
건설소방	1 (12)	1 (12)				
교 육	(4)	(4)				
특별위원회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안건 접수 : 46건(조례안 34, 예산안 2, 동의안 6, 결의안 1, 기타안 3)

2. 처리 의안 : 42건

- 원안가결 : 38건(조례안 28, 예산안 2, 동의안 4, 결의안 1, 기타안 3)
- 수정가결 : 3건(조례안 2, 동의안 1)
- 기 타 : 1건(기타안 1)

3. 의안접수 내용

- 조 례 안 : 34건(원안가결 28, 수정가결 2, 계류 4)

연 번	접 수 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1.04.12.	이춘우 의원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2	'21.04.12.	박차양 의원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	"
3	'21.04.12.	도지사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 가결
4	'21.04.12.	이선희 의원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5	'21.04.12.	도지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1.04.12.	도지사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1.04.12.	도지사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1.04.12.	도지사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
9	'21.04.12.	남영숙 의원	경상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계류

연 번	접 수 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0	'21.04.12.	윤승오 의원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계류
11	'21.04.12.	나기보 의원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 가결
12	'21.04.12.	도지사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13	'21.04.12.	도지사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1.04.12.	홍정근 의원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류
15	'21.04.12.	박태춘 의원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16	'21.04.12.	곽경호 의원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17	'21.04.12.	권광택 의원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21.04.12.	윤승오 의원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21.04.12.	김대일 의원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21.04.12.	남용대 의원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	"
21	'21.04.12.	박현국 의원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21.04.12.	신효광 의원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
23	'21.04.12.	이춘우 의원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4	'21.04.12.	이재도 의원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21.04.12.	이춘우 의원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6	'21.04.12.	남진복 의원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류
27	'21.04.12.	김시환 의원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연 번	접 수 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28	'21.04.12.	도지사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29	'21.04.12.	이재도 의원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21.04.12.	배한철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
31	'21.04.12.	최병준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
32	'21.04.12.	권광택 의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21.04.12.	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 공식자율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21.04.12.	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예 산 안 : 2건(원안가결 2)

연 번	접 수 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1.04.12.	도지사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 가결
3	'21.04.12.	교육감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동 의 안 : 6건(원안가결 4, 계류 2)

연 번	접 수 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1.04.12.	도지사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2	'21.04.12.	도지사	2021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21.04.12.	도지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
4	'21.04.12.	교육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
5	'21.04.12.	도지사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계류
6	'21.04.12.	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계류

○ 결 의 안 : 1건(원안가결 1)

연 번	접 수 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1.05.03.	이춘우 의원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 가결

○ 기 타 안 : 3건(원안가결 3)

연 번	접 수 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1.04.23.	의장	휴회의 건	원안 가결
2	'21.04.23.	의장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1.04.23.	의장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4. 조례 공포 사항 : 30건(도 25, 교육청 5)

연번	공포번호	자 치 법 규 명	공포일	비고
1	제4493호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1.05.20.	도
2	제4494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	제4495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
4	제4496호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05.24.	"
5	제4497호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	"	"
6	제4498호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7	제4499호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8	제4500호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	"	"
9	제4501호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	"
10	제4502호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1	제4503호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2	제4504호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
13	제4505호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14	제4506호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
15	제4507호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	"	"

연번	공포번호	자 치 법 규 명	공포일	비고
16	제4508호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	"
17	제4509호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	"	"
18	제4510호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21.05.24.	도
19	제4511호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	"
20	제4512호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
21	제4513호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
22	제4514호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23	제4515호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	"
24	제4516호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	"
25	제4517호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	"
26	제4518호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21.05.27.	교육청
27	제4519호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	"	"
28	제4520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
29	제4521호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0	제4522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VI.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021년 4월 23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임미애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성 출신 임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접하게 된 소식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5개 지구, 3조 9,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반영되도록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월 26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통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위상에도 변화가 예상되면서 처음에 계획한 통합신공항의 대규모 민항시설과 물류단지 조성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를 담아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들께 공항의 위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국내공항의 위계를 중추·거점·일반 공항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위상에 맞게 시설규모와 활주로 길이, 취항노선과 취항할 수 있는 나라도 달라집니다. 중추공항은 인천공항 하나뿐이고요. 대구공항은 거점공항으로, 전국 6개의 거점공항이 있습니다. 제주, 청주, 김포, 김해, 무안, 대구가 거점공항입니다. 그 외에 10개의 일반공항이 있습니다.

단장님, 위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활주로 길이와 역할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공항 부지를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활주로 길이를 길게 하고 공항 부지가 아주 넓으니 유럽노선도 확보하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기본적으로 공항 부지하고 위계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활주로 길이라든가 수요시설이 나오게 됩니다.

○임미애 의원

제가 공항유치 홍보영상물을 제작년에 봤을 때 의성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갈 수 있다는 홍보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설렸는데, 국내법에 따르는 위계에 의한다면 실제로 그것은 과장된 홍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공항 위계가 아시다시피 중추·거점·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공항 자체가 거점공항입니다. 과장되었다기보다는 저희가 하고 싶은 공항, 그리고 충분히 그 정도는 될 수 있다는 저희의 의지와 희망,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담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현재 대구공항이 거점 공항인데 이 거점공항을 뛰어넘는 중추공항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상의 위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중간에, 없는 위계를 어찌면 법으로라도 만들기 위해서 노력 하겠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사실 관문공항이라는 용어가 제2차 공항종합개발계획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점공항이라는 자리에서 충분하게 미주, 유럽까지 갈 수 있도록 항공수요라든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그럼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거점공항에서도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법과는 상관없습니다. 계획상 거점공항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 아래에 있는 계획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미애 의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차 공항종합개발계획에 통합신공항의 위계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지금 김해공항이나 대구공항이 같이 거점공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덕도공항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덕도공항이 사실상 김해공항의 기능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면 가덕도공항이나 대구공항은 같은 위계인 것이 당연하고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임미애 의원

그러면 같은 거점공항이라고 말씀하시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임미애 의원

제가 어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전문을 쭉 살펴봤습니다. 보는 중에 굉장히 놀라운 조항을 발견했는데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보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해서, 공항 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해서 공항 시설법 제3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가덕도신공항도 거점 공항이고 대구공항도 거점공항인데 가덕도신공항이 법에 따라서 위계가 정해지면 그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통합신공항, 대구신공항이 위계가 설정되어야 된다는 법조문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가덕도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5차에서는 김해신공항 확장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이 2개가 영남권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이후 올 초에 가덕도 특별법이 확정되면서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폐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미애 의원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폐기가 되고 가덕도가 그 위계를 승계하는 방향이라면, 이 법 조항에 의하면 가덕도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의 위계는 다시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5차 공항개발계획까지는 가덕도 관문공항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실제로 지금 계획을 세우게 된 6차 공항개발계획에 의하면 가덕도와 통합신공항은 위계 설정이 새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실제로 통합신공항의 위상이 가덕도공항에 밀리고 기능도 축소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우일까요, 아니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지금 현재로는 기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대구시하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님과 함께 국토부에 지금 줄기차게 가덕도와 같은 위계와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같은 위계로?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임미애 의원

그러니까 같은 거점공항의 위계로?

지사님께서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

습니다. 우리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건설되기 때문에 빨리 건설해서 항공노선을 선점하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100%...

○임미애 의원

동의하시나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의원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거점공항으로서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자신의 위계를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한다면 공항을 빨리 건설해 놓으면 전투기만 빨리 뜰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상북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가덕도공항과 통합신공항 간의 위계를 제대로 부여받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을 지금 당장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임미애 의원

다음 질문인데요. 물류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 하셨습니다. 현재 대구·경북의 항공화물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지금 대구공항에서는 항공화물은 없습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차지하고 '19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항공으로 수출입되는 화물이 한 7만 8,000톤 정도 됩니다.

○임미애 의원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받아보면 2050년까지 26만 톤의 물류를 신공항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7만 8,000톤과 26만 톤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이것을 어떻게 늘리겠다고 하는지, 그 많은 물류를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일반적으로 항공화물은 경박단소형의 화물을 많이 수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 제조업이라든가 반도체·휴대폰·바이오 등이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구조조차 항공물류가 발전하기에 좀 유리한 곳입니다. 그 근거로 저희가 2019년에 경북도 자체의 용역을 한 결과 기존의 산업화물 수요에다가 전자상거래가 증가한다, 그리고 항공신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공항이 활성화되면 인근 물류까지 해서 2050년도에는 26만 톤까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일반 산업은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늘어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 항공분야는 이것과는 달라서 공급망을 먼저 갖추어 놓고

수요를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항 하나 짓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산업 전반을 새롭게 짜겠다는 것과 아주, 이 얘기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경상북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경북도에서는 기존의 주력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면서 또 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주변지역에서 수출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항공소재·부품 또 서비스 등 각종 첨단산업을 담아서 새롭게 육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에서 군위와 의성에 각각 100만 평 규모의 항공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담을 구체적인 업종과 산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게 마무리되면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도내의 신산업을 발굴하고 시·군 연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위해서 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충분한 항공물류 수요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기존산업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저희 의성이나 군위의 군민이 전투기 띄워보겠다고 그 추운 겨울에 한 2년여 동안에 공항에 매달린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살아보자, 재도약해 보자.”라는 그런 갈망으로 공항에 매달렸었습니다.

전자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가덕도신공항은 여야가 달라붙어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통과되었고요. 지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지역의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우리 군위·의성군민들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인식하시고, 일단 위계를 확실하게 잡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엄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장식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표 1]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사진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자 했나? 너희가 하자 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현수막을 보면 아무래도 공항 이전부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하는 건은 아마 이철우 지사님이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이, 누가 먼저 했는지 그런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이제 염원을...

○임미애 의원

지사님, 제가요 시간이 별로 없고요.

똑같은 질문을 지사님께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군위를 대구로 편입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의원

절차와, 만약에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시기가 언제쯤일지 짧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통합신공항 후보지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군위군에서 공식적으로 지난해 8월에 건의서가, 저희 도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통합의 영향, 그리고 통합신공항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을 분석하려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임미애 의원

다 마무리되면, 군위군민 입장에서는 “언제 이게 마무리되었느냐?”라고 되게 초조해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하신다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용역 중간에라도 용역의 줄기가 갖추어지면 절차상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의원

알겠습니다.

[표 2]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표2 군위군 공동합의문							
공 동 합 의 문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시·도 국회의원은 대구경북의 미래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드시 실증시키기 위해 관련 법적절차와 이권부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며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1.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전입로(공항 IC 등 포함), 군 영외관사는 군위군에 배치한다. 2. 공항신도시(배후산단 등)는 공항이전사업 종료시까지 군위군에 330만㎡, 회성군에 330만㎡를 각각 조성한다. 3.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을 공항이전사업 종료시까지 군위군에 건립한다.	4. 군위군 판동도로(동군위 IC ~ 공항, 25km)를 공항이전사업 종료시까지 건설한다. 5. 지방자치법(제4조)과 관련 절차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추진한다. 2020. 7. <table> <tr> <td>대구광역시장 권영진</td><td>경상북도지사 이철우</td></tr> <tr> <td>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td><td>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td></tr> <tr> <td>대구시 국회의원 박상도</td><td>경북도 국회의원 이만희</td></tr> </table>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	대구시 국회의원 박상도	경북도 국회의원 이만희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						
대구시 국회의원 박상도	경북도 국회의원 이만희						

이전부지 확정할 때 군위군과의 공동합의문입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민항 및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 군위군 배치. 그다음에 공항신도시를 공항이전사업 종료 시까지 의성·군위에 각각 100만 평 조성한다. 세 번째, 대구·경북 공무원 연수시설을 군위군에 짓는다. 네 번째, 동군위 IC에서 공항에 이르는 2.5km의 군위군 관통도로를 건설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방자치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두 분의 시장,지사님, 국회의원님, 의장님들이 서명을 하셨고 군위군민과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어기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사업들을 다 집행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냐고 물었더니, 국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얼마나 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제가 추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임미애 의원

예, 이게 현재 용역과제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 것은 분명한데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을 들인,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과 그다음에 시설물, 자산들이 모두 다 대구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군위가 대구로 간다는 말은 군위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산들이 모두 다 대구로 간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장소적 범위가 군위니까 그런 전제를 까는 게 맞습니다.

○임미애 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의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보내려면 일찍 보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보내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주고 설계하고 집행하는 중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군위를 보낼 것 같으면 그러기 전에 보내려면 일찍 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에 필요한 절차들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최종적인 결론은 정부 입법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의성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군위군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약에 보내야 된다면 소보면은 경북 의성군에 떼어놓고 보내야 이게 진정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한다면 국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일부 지역의 주민들의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말씀으로 충분히
가치는 있습니다만...

○임미애 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올리면 그것도 검토하시겠
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부분은... 지금 사안은 군위군 전체의 대구 편입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해왔고 일부 시·군, 그러니까 군위의 나
머지 지역과 소보를 분리하는 문제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폐지분합할 때, 분할과 합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과 다른 차원에서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그 절차 못지않게 전체 군위군, 또 의성군민들의 합의랄까,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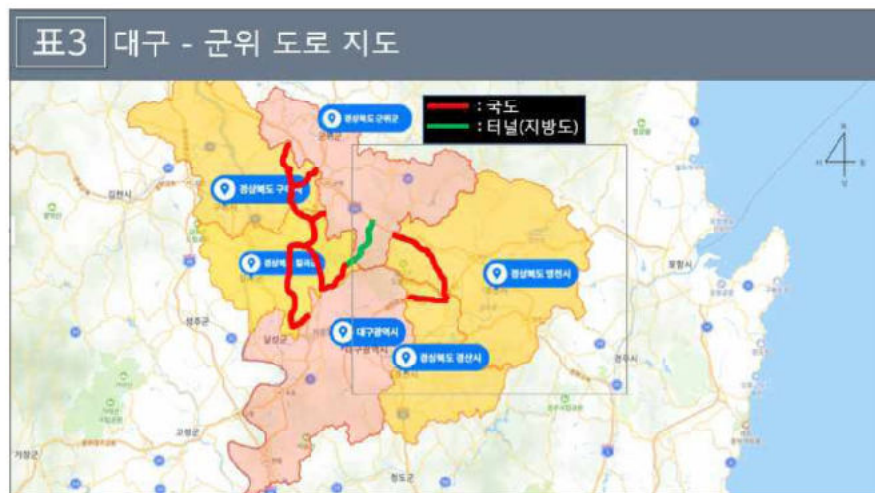
○임미애 의원

분명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할 때 사전 검토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행안부의 행정구역 실무편람을
찾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사전 검토사항으로 생활권의 일치 여부 등도살펴
보게 되어 있고요. 개발권역과 합치하는지 여부도 살펴보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무엇이었냐 하면

‘지역·지세·교통 등 지리적 여건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 교통은 국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위는 대구와 국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칠곡이나 구미를 거쳐야 군위에 닿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군위로 연결된 터널 역시 칠곡을 통해야 군위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불가피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무리한 제안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책 제안하기 전에 혹시 내부에서 사전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요건에 관해서는 미리 충분히 검토를 했고,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

○임미애 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이게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런 내용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임미애 의원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임미애 의원

이런 상황에서 통합이 된 사례가 있던가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리적으로 연결하면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것이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만 교통편이 사람, 인적교류를 하는 교통편이 연결이 안 됐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자치단체 간에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다만 우리 인근에 대구 달성군에 가창면과 달성군 본군 쪽에 지리적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아니, 저희는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성군과 가창면의 사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혹시 이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칠곡군이나 성주군, 그 다음에 구미시, 영천시, 이런 인접 시·군에서 연쇄적으로 대구에 편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적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만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아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머지 인근 6개 시·군, 영천·경산·칠곡·고령 이런 데 그런 우려가 지금 아니어도 평상시도 선거 때라든가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와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아까 절차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고 도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충분히 브레이크 장치가 있고, 또 만약에 인근 시·군의 광범위한 대구 편입 요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대구·경북 통합과 맥을 닿아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미애 의원

인근 시·군에서 똑같은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면 똑같은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좀 다르게 봐야 된

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게,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저는 공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쪽을 편입할 때는 이 기준을 들이대고 저쪽을 편입할 때는 저 기준을 들이댄다면 도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갖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행정의 공평성, 원칙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민의가 중요하니까 절차 중에 도의회의 의견수렴 과정, 또는 기초 자치단체 의견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표기구의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원칙보다는 조금 상위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미애 의원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 이 모든 진행과정이 이해가 가는지를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한 30년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30년 됐습니다.

○임미애 의원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의 사례가 지금 말고 '93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 한 번 겪었습니다.

○임미애 의원

경북도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지사님 답변 시간입니다.

그럼 1. 아까 현수막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현수막을 지사님 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것을 봤을 때는 '아, 이것은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이 제안을 한 것이구나.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결정이었나 보다.'라고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도민들도 많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살 떼어줄 때 조건 없이 내 살 떼

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살 떼어주겠다는 소리 절대 안 했고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군위군수가 대구시장을 만나서 대구 편입을 요청했는데 대구 시장이 ‘그게 되겠느냐. 어려운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무산됐었습니다. 그 문제를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면, 공항은 대구·경북 발전의 역사적인 사건인데 군위는 우리의 0.8%다. 1%가 안 됩니다. 군위군민이. 그러면 그것을 쥐서라도 성사가 돼야 되지. 어느 것이 더 역사에 남는 일이나?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먼저 가서 ‘군위, 가라’ 그럴 리가...

○임미애 의원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 이철우

도지사가 바보가 아닌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임미애 의원

그러면 이것은 명확해집니다.

군위군수가 대구시장한테 제안을 했고 거절을 당했고, 그런데 결정되는 과정에서 워낙 긴박한 상황에서 지사님이 이것을 다시...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그것이라도 해 보자.’ 이렇게 돼서 한 것입니다.

○임미애 의원

혹시 하기 전에, 제안을 하기 전에 이런 제안을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쳤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아까 국장도 이야기했지만 인접해 있느냐 없느냐? 인접하지 않으면 편입이 안 되거든요. 도로가 있나 없나? 그것은 나중에 도로를 놓으면 되는 문제이고, 공항을 하느냐 못 하느냐 문제에서 군위가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작은 문제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미애 의원

지금 지사님의 답변을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도민이 어느 정도가 될지 저는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단추를 쥔 때 우리가 두 번째 단추를 첫 번째 구멍에 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도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즉흥적인 제안으로 도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도지사 이철우

아니, 지금 공항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항이 만약에 결정이 안 됐다. 가덕도는 되고 우리는 안 됐다. 지금 대구·경북은 허탈해서 어떻게 할지 모를 것입니다.

솔직히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마당에 군위가 먼저 좀 들어

간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문제시할 도민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미애 의원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사님의 답변을 제가 충분히...

지사님의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방식을 놓고서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군위 편입하는 문제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체로 즉흥적이고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비판 들어보셨나요?

○도지사 이철우

저는 그것 못 들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잘한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임미애 의원

아, 그렇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도의원들도 다 도장 찍었잖아요, 다. 대부분이 다 도장 찍었는데...

○임미애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장과 관련해서는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그 시기에...

○도지사 이철우

임 의원은 안 했지만 다른 사람 대부분은 했잖아요.

○임미애 의원

의성군의 김수문 도의원님도 도장을 안 찍었는데요. 그 당시에 도장을 찍을 것을 요청하는 상황은 굉장히 긴박했고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저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임미애 의원

잠깐만요. 이전 부지가 결정되지 못하는 것은 너네가 도장을 안 찍어서 그렇다는 식의 분위기를 풍겨 가면서 시·군의 부단체장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정에 협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그 길인가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도장을 찍어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장 찍은 사람들이 모두 다 흔쾌하게 지사님의 결정에 동의해서 도장을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자가당착적인 발언이다라고...

○도지사 이철우

저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저도 흔쾌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공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길을 간 것이지, 저도 흔쾌하게 '줘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임미애 의원

그럼 다음을 한번 볼게요.

표 5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표5 공룡 조형물 사진



제가 지사님께서 일을 추진하실 때 굉장히 즉흥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이런 비판이 시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진은 공룡 조형물 사진입니다. 지금 이게 옮겨졌지요? 도청 본관 앞에 있다가 홍익관 쪽으로 이동됐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볼까요?

(동영상 상영)

2021년 초에 공룡 조형물 자리에 신공항 비행기 조형물을 설치하려다가 언론의 비판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활주로 조형물 설치비용은 경상북도 자금을 관리하는 농협경북본부가 경북문화재단에 기탁금을 주고 그 돈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농협으로부터 설치비용 받으셨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보류된 것이 아니고요.

조형물은 제가 구글에 갔다 와서, 구글 같은 세계적인 회사도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뜻으로 해 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우리도 그런 정신을 차리자 이래서 설치했는데, 2020년도에 우리가 정부종합평가를 1등을 하고 청렴도도 최고 등급 나오고 이래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한 200m 옮기고 그 자리에는 대구·경북 역사에 남는 공항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공항 상징물을 하나 만들자 이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류한 것이 절대 아니라, 언론에 한번 냈다고...

○임미애 의원

보류 아니고.

아니, 그러면 농협으로부터 돈은 받으셨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잠깐만, 언론에 냈다고 보류할 것 같으면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즉흥적이지요. 말이 안 됩니다. 7월 30일에 조형물 만들 것입니다.

○임미애 의원

아, 7월 30일에 조형물 만들 겁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1주년 기념으로 만듭니다.

○임미애 의원

그러면 그것은 경북...

○도지사 이철우

전 도민 대표들 모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임미애 의원

그러면 농협경북본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입니까?

○도지사 이철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농협본부, 농협하고 대구은행 이런 데는 사회공원자금이 있습니다. 사회공원을 해야, 정해진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 도에 준다기에 '우리 도에 주지 말고 문화재단에 주는 것이 좋겠다, 문화사업이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에 돈이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그 돈을 받았다면 지사님,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행법 34조의2에 의하면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로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 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해서 은행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에서도 우리에게 3억을 냈고요. 대구은행도 내고, 다른 큰 기업도 다 문화재단에 돈을 냅니다. 그것은 법 위반이 전혀 아닙니다.

○임미애 의원

현대자동차가 돈을 내는 것과 농협경북본부가 돈을 내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농협경북본부는 경상북도 도 기금, 금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검토가 된 것입니다.

○임미애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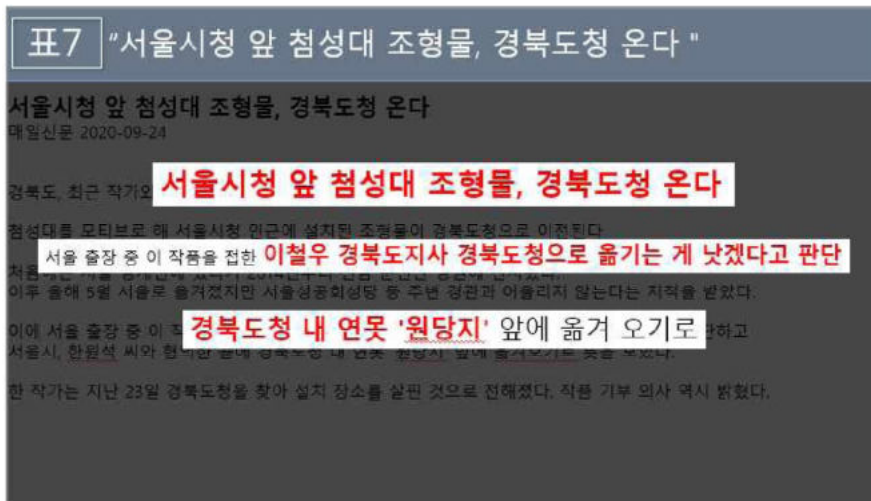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도지사가 감빵 가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검토가 된 일입니다.

○임미애 의원

표 7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청 앞 첨성대 조형물이 경북도청에 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분리되어 온 침성대 조형물이 도의회 뒤편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6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저것 보셨나요?

○도지사 이철우 예.

○임미애 의원

저것도 지사님께서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게 아니고 누가 전달을 잘못했는데요. 서울시청에서 보니까 침성대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저것 우리 경북의 좋은 것이 저기 서 있으니 자랑스럽다.’ 이랬는데 이튿날 신문에 보니까 엄청 까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것 틀림없이 철거할 것인데 공짜로 철거하면 우리 달라고 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수소문해서 부산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사정을 하고, 형편이 철거할 것 같으면 우리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장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직원이 있느냐?” 저보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들한테 주겠다.” 이래서 우리한테 오기로 했는데 서울시하고 소송이 걸려서 철거를 못 한 것입니다. 철거를 하긴 했는데 이사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송이 끝이 안 나서 마당에 갖다놓고 아직까지 설치를 못 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임미애 의원 지사님.

○도지사 이철우 예.

○임미애 의원

지사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서는 경상북도에 관련 조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당연히 제가 일을 하면 조례에 따라서 다 일을 하지요.

○임미애 의원

조례 화면 부탁드립니다.

표9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해서 제가 이 위원회가 열렸는지 회의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했더니 안타깝게도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뒤로 이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니, 조형물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지요. 이것은 아직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임미애 의원

아니, 그렇게 치면...

○도지사 이철우

설치하기 전에 이제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임미애 의원

'19년도 공룡 조형물, '20년도 공항 활주로, '21년도 첨성대, 모두 다 관련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니, 의원님, 아무리 그렇지만 돈 1,000만 원 짜리를 도지사가 갖다 놓는 것을 심의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게? 1,000만 원짜리 갖다 놓는데 공공조형물이라고 하고 심의한다 그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의원

지사님, 조형물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에 멧돌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것 다 심의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도지사가 “이것 해

보자.” 하면 직원들이 다 심의를 하고 평가해서 하는 것이지
도지사가 일일이 “조례에 어긋나나? 그것 몇 조에 있나?”
이런 것을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것을?

○임미애 의원

물어보셨어야 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것 직원들이 다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미애 의원

실제로 충북과 대구시 등 상당수의 지자체는요, 공공기관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진흥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돌덩이 하나를 갖다 놓을 때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도지사 이철우

제가 모르긴 모르겠는데 그 조형물이란 도의 다른 데 설치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도청 내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기 전문가가 누구예요? 도청 내에 설치할 때 하는 거예요?

(「도로, 광장, 공원 이런 데 설치하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어디?

(「광장, 공원…」 하는 의원 있음)

(「도로, 광장, 공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 거기 조형물을 이야기하지 도청 우리 집에 설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미애 의원

도청은 지사님 앞마당이 아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러면...

○임미애 의원

시간이 길지 않아서...

○도지사 이철우

그러면 제가 그 절차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1,900만 원짜리 공룡 뼈를 하는데 조형물 설치 심의를 안 했다. 그러면 제가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징계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절차를 알아보고...

○임미애 의원

지사님의 지시...

○도지사 이철우

만약에 직원보고 제가, 도지사가 “그것 해라.” 하면 직원은 참고를, 다 법을 검토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미애 의원

맞습니다. 지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도지사 이철우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좀...

○임미애 의원

무조건 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 이철우

의원님이 도지사를 그래도 비판하려면 비판할 것을 좀 비판해야 되지, 조형물 1,900만 원짜리를 우리 도청 앞마당에 갖다 놓은 것을 심의했나, 안 했나 이렇게 따지면 도민들이 들을 때...

○임미애 의원

너무 작은 것으로 비판을 드렸나요?

○도지사 이철우

아니, 도민들이 들을 때는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임미애 의원

저는 지사님께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것이... 그래 하잖아요.

○임미애 의원

통치행위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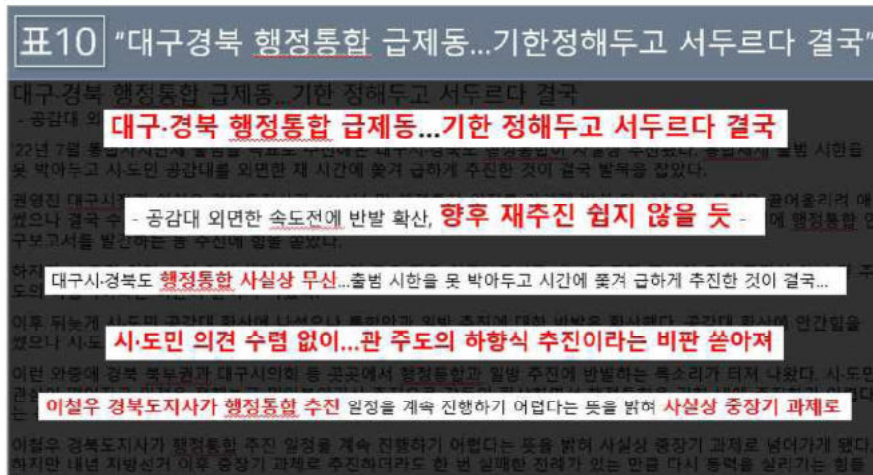
○도지사 이철우

안동시에 우리가 조형물을 갖다 놓을 때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우리 도청 안에 갖다 놓을 때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임미애 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 10]을 한번 열어 주시겠습니까?



‘대구·경북 행정통합 급제동’ 이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20일 지사께서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대구
와 경북을 통합할 수 없으니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렇
게 이야기를 하시고, 대구와 경북 간에 교통공사 설립을 검토
하라는 지시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통합
논의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임미애 의원

통합 논의에 대한 마무리를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
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 마무리는, 아직까지 4월 29일 날 공론화위원회 보고회가 남았거든요. 보고회 들어 보고, 지난 4월 14일 날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만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방향은 맞으나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니까 조금, 장기과제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도 일단 받아들이고, 일단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법을 만들 국회의원들이 ‘조금 연기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29일 날 가서 공론화를 위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대구시장과 제가 상의를 해서 할 것인데, 지금은 당장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여론조사에도 65%가 ‘장기과제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찬성은 더 많지만, 반대보다 찬성은 많지만 그러나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결론은...

○임미애 의원

너무 성급하게...

○도지사 이철우

결론은 좀 있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예, 그러면 4월 말 이후에 보고를 받아서 결과보고서를 보고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임미애 의원

이것이 일정을 정해 놓고 추진되는 것이 너무나 무리하

다는 문제 제기가 저희 의원들 내에서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지사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밀어붙이는 분위기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먼저 통합론을...

꺼내시면서 “그 길만이 경북이 살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들의 반대 여론이 자꾸 높아지는 것은 도민들의 의식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사님께서 선부르게 의제를 던지신 것인가요?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 원래 국회는 답변하는 사람은 마이크 안 꺼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향은 맞고 가야 되고, 다음 선거 때 안 하면 4년 후에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역시 이렇게 동력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이라든지 다음에 있을 때 전국적인 사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구·경북이 먼저 가면 그만큼 빨리 발전하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국적인 사항으로 가자. 우리 대구·경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도, 전라도, 부울경이 같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지사님도 굉장히 안타깝겠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는 도민들, 그리고 도의원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 통합 논의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이후에 남아 있는 임기 1년 동안 어떤 도정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것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요.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 이거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 일부가 있었고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반대하는 사람 시끄럽고 찬성은 조용해서 그렇지,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다 여론이 나와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예,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의 답변은 충분히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은 도민들께 맡기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21년 4월 23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시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칠곡 출신 김시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323회 경상북도 도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바람 행복경북을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위기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신공항은 뜨겁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결과를 축하드립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감사합니다.

○김시환 의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하대성 경제부지사님과 그리고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서는 취임하신 후 도정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도 하시고,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크게 애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신공항의 건설은 중·장거리 노선을 확보한 제대로 된 국제공항, 항공물류의 내륙 거점, 일자리 창출, 경제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도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님, 먼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반드시 건설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특별법 제정에 의한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특별법 제정 여부를 떠나 2028년까지 공항 건설을 위한 지사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전하는데 대구공항은 그야말로 군공항입니다. 군공항에 민간이 플러스돼서 있는데 군공항은 이전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전을 합니다. 그것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대구공항이 210만 평인데 그것보다 한 두 배 반 정도의, 두 배 이상의 땅을 확보해서 크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공항은 대구에 있는 땅 210만 평을 팔아서 이것을 짓는 것이 기부 대 양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대구시가 짓게 돼 있습니다. 대구시가 땅을 팔아 쓰고, 쉽게 이야기하면 건설비를 현물로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기재부에서 예산통과 이런 것은 부탁 안 해도 우리가 땅으로 현물을 받아 냈기 때문에 실력대로 짓게 돼 있습니다.

○김시환 의원

재정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도지사 이철우

현재는 문제없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김시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리고, 거기 민간이 가는데 가장 궁금한 것이 민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군공항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김시환 의원

그렇지요.

○도지사 이철우

임미애 의원님도 말씀에 “군공항 하려고 그것 2년 동안 쌓았느냐?” 하는데 저희들도 군공항만 있으면 그렇게 추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공항은 한 1조 2,000억 드는데, 지금 대구에 땅이 5만 평 있습니다, 민간 땅이. 그것이 평당 1,000만 원 계산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시환 의원

그러면 한 4,000, 5,000억 정도 됩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것이 반으로 줄 수도, 왜냐하면 거기 210만 평인데 개발해서 쓸 수 있는 땅은 한 105만 평으로 봅니다, 반은 공원부지로 주고. 그러면 2,000억 내지 3,000억은 그 돈이 있고, 그다음에 전부 다 1조 2,000억, 계산하니까 들더라고요. 그래 한 1조 가까이 받으면 되는데 1년에 우리가 SOC로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한 4조 넘습니다, SOC만. 그러니까 그 안에, 건설이 한 4, 5년 걸리기 때문에 1조 받는 것은 한 2,000억, 3,000억씩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김시환 의원

그래서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도지사 이철우

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김시환 의원

그러면 추진일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2028년 개항 시기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가능하지요?

○도지사 이철우

지금 용역을 쥐서 있고요. 용역이 나오면 내년에 또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면 그 땅을 사들이고 이렇게 하다가 2024년에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해서 5년 동안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큰 문제없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시환 의원

그러면 민간공항 부분에서도 큰 문제없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도지사님.

○도지사 이철우 예.

○김시환 의원

가장 염려하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정말로 우리 공항 하나? 그리고 시기가 언제고? 2028년 맞나?'

○도지사 이철우

그래 아까도 그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 이것입니다. 가덕도가 됐는데 우리는 공항이 시원찮은 것 아니냐? 가덕도와 겹치는 부분을 하지 말라고 부칙 조항에 넣었다 하는데 그것 조항은 김해를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김해를 그냥 법으로, 나 살아 있으니까 가덕도 할 때 김해는 없애라. 그래서 김해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김해 있을 때도 대구와 같은 급이고 무안도 같은 급이고 충주도 같은 급이고 김포·제주

다 같은 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도민들께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덕도는 가덕도대로 가고 우리 대구·경북공항은 대구·경북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실력이다. 우리 실력만 있으면 더 빨리 제대로 하면 되는데 아까 ‘유럽노선 가느냐, 안 가느냐’ 무슨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유럽노선 가는 것도 실력입니다. 활주로 3,500 이상만 되면 어떤 비행기든지 다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주로 3,500 이상짜리를 확보 하나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갈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김해에서도 유럽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는데 갈 사람이 없어서 취항했다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항했다가. 그래서 그런 실력을 우리가 길러야 되고, 앞으로 공항은 아시아·아프리카공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큼니다. 유럽하고 미주는 지는 나라이고 아시아·아프리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아시아·아프리카 시대에 대한민국이 가장 빛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항이 번쩍번쩍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 대구·경북에 굉장한 활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시환 의원

그리고 어제 4월 22일 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반영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군공항과 민간 공항은 한다. 단 좀 전에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의지와 또한 추진 일정, 2028년까지 그 추진 일정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지이고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세요.



도지사님. 세계무역협정, 그러니까 RCEP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도지사 이철우 예.

○김시환 의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권역별 블록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무역은,
FTA 아시지 않습니까? 자유무역협정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지난해 11월 5일 한국이 비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해서 일명 RCEP에 관한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자유무
역협정으로 인구, 명목총생산 그리고 무역량이 전 세계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에서 실감은 안 되지만 RCEP의 인구는 세계 총 인구22억
6,000만 명, 여기에서 우리 한국과 또한 일본과 FTA 하기
에도 힘든데 RCEP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무역협정이 됐다,
그렇죠?

○도지사 이철우 예.

○김시환 의원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상황은 달라진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봐서 만드시, 좀 전에 염려하신 국제공항, 인천공항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에 상응하는 중부 내륙에 만드시 국제공항을 전략적으로 또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도지사님 의견 피력해 주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예, 방금 이 지도에서 봤다시피 앞으로 아시아·아프리카 시대인데, 아시아가 더 빨리 발전합니다. 그러면 아시아 중에 관광 오고 무역할 나라가 어느 나라겠느냐? 일본은 이미 너무 늙은 나라가 됩니다. 우리보다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는 게 한국이 될 거라고 역사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될 거다. 그러면 한국의 공항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대구·경북은 이제 수도권 관광이 끝난 시대입니다. 그러면 대구·경북 관광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왜? 한국 속의 한국이고 리얼 코리아, 진짜 한국이기 때문에 관광도 오고.

그리고 또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면 먹거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의 농산물이 불티나게 팔릴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작년에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농산물이 세계로 나가는 게 20% 더 팔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항을 지어놓으면 농산물이 하루에 비행기 한 대 나가도 5만 톤이 됩니다, 5만 톤. 우리가 26만 톤

목표인데 비행기 한 대만 매일 나가도 5만 톤이 되고, 두 대 나가면 10만 톤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딸기 하나로 한 대를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딸기 하나로. 그러면 대한민국의 딸기가 지금 인기가 치솟고 있고, 샤인머스켓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아 시장에 바로 바로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희망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김시환 의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든지 어떠한 산업 전반적인 것이 세계적인 경제 블록화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맞는지 참으로 의심스럽고, 본 의원은 반드시 내륙공항을 최고의 국제공항으로 30년, 100년을 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십시오.



저것이 우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조금 전에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경제 기조는 바

뛰고 있습니다.

4차산업 시대의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활주로 부분도 본 의원 개인은 3,500m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4,000m에 폭이 60m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그것은 크면 클수록 좋지만 앞으로 비행기가 그렇게 큰 비행기, 보잉747 정도로 가지 그보다 더 큰 것은 지금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비행기는 지금 단절됩니다. 단절되기 때문에 3,500m 하면 충분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거하는 실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3,500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4,000m를 했으면...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보통 민간은 1만 피트입니다, 민간은 1만 피트. 그다음에 군은 기준이 9,000피트입니다. 그래서 군보다 1,000피트가 더 많은데, 1만 피트가 3,000m입니다. 3,000m만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0까지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하는 것은 허가도 잘 안 나올뿐더러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환 의원

그러면 허가야 또 시대가 변하고, 어차피 생물이기 때문에...

○도지사 이철우

우리나라는 인천공항만 4km짜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4km짜리.

○김시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해상물류 발전에 불리한 것이 우리 경북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도지사 이철우 예.

○김시환 의원

저번 2019년도에도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우리가 섬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통합신공항을 반드시 국제 허브공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2028년도까지입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보고 도민들께서 정말로 저렇게 가느냐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가질 겁니다.

○김시환 의원 예.

○도지사 이철우

그런데 실제로 실력이 저렇게 되면 가는데, 미국이나 남아메리카나 유럽에 가려면 굉장한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항공사는 절대, 한 노선으로 가면 비행기 3대가 와야 되기 때문에 1대 세워놓고 2대가 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자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 노선은 인천에 가야 되고, 나머지 우리는 중장거리 정도 계산을 하고 가야 되지. 도민들께 ‘유럽으로 미국으로 남아메리카로 갈 수 있는 그런 공항입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나중에 도지사 너 거짓말하지 않았냐 할 수 있으니까.

○김시환 의원

본 의원은 미래...

○도지사 이철우 희망은 저렇지만 수요가 없다.

○김시환 의원 예.

그 수요는 미래에 추정컨대 우리 RCEP이라고 하는 FTA 애기한 블록화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지사 이철우

참고로 저희가...

○김시환 의원

앞으로 세계인들이 많이 움직인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올 수 있는 부분을 갖춰놓으면 세계인들이 온다. 단지 국내에 있는 분들, 국민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몇 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그렇게 오면 너무 좋죠. 수요가 있으면 노선이 생기는 겁니다.

○김시환 의원

예, 여하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세계로 뻗어가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힘을 보탬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동엽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사진 슬라이드 게시해 주십시오.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JK 임대아파트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JK 임대아파트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 슬라이드요.

방금 보신 슬라이드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칠곡 지역에서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잠시 봤습니다.

이 건물은 18년째 공사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난해 5월 칠곡군에 있는 공사 중단 아파트에

30대 남자가 투신하는 사건도 있었고, 6월에는 한 유튜버가
휴가 체험을 목적으로 무단 침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울러 신문고를 통하여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과 선도사업 공모 여부 등 환경 개선 요청 건도
총 5차례나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여 2013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방치건축물정비법을 제정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잘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도내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현황과
그동안 도가 조치한 실적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2014년도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 후 국토부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우리 도내는 공사 중단 건축물이 14개 시·군에
30개 현장이었습니다. 현재는 7개 현장이 준공 또는 철거
되고 23개 현장이 남아 있습니다.

○김시환 의원

그렇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2019
년도 8월 달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다룬 이 자료입니다.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
건설소방위 상임위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큰 진
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나, 작년에
얼마나 쓰였고 올해는 얼마나 계획을 하신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올해 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정비에 관련한 예산은 지금까지 편성한 사례는 없습니다.

일부 시·군에 안전 조치를 위해 가지고 일부 지급한 사실이.

○김시환 의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시환 의원

혹시 법 제13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정비 기금을 운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 설치할 필요는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기금 운용은 지금 도 자체 예산만으로는 재원을 확보 하기가 어렵습니다. 향후 국비 보조가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설치,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환 의원

여기에 이렇게 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3조, 공사중단 정비기금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환 의원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국회에서 방치건축물 정비법이 올 3월에 일부 개정됐죠,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개정됐습니다.

○김시환 의원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되죠,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김시환 의원

또한 이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21건이나 되는데 이에 대해서 철거 명령은 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철거 명령은 일부 했고요. 내년부터는 시·군과 같이 협력해 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철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 의원

방금 본, 본 의원 지역에 있는 저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얼마 전에 우리 건설국 과장님도 현장에 왔다 갔는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시환 의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특별한 우리 기금이라든지 예산 확보가 진짜 힘들니다. 힘들어서 내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나면 중앙정부에 계속 지원 건의를 요청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 의원

사실 이쪽 부분은, 칠곡군 북삼읍은 18년 동안 계속 아파트 건설 중입니다. 이것을 이렇게나 많은 건의와 매스컴을 통해서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관심을 주겠습니다.

○김시환 의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도지사님이 현장을 직접 뛰시는데 제발 우리 칠곡군의 어려운 부분도 좀 와서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국장님이 한번 모시고 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문제는 사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도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방치 건축물 정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일 때 우리 도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행부는 우리 도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답변은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도민과 학생, 교직원을 대신해서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고 아울러 우리의 미래교육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반갑습니다.

○김시환 의원

교육감님, 현재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행정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교육감 임종식 예.

○김시환 의원

최근에 마스크를 보니까 중장기로 넘어갔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행정통합은 하면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교육에 관한 부분은 논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행정통합에 대한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임종식

의사결정은 전문성과 관련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처럼 아직까지 전문적인 연구나 또 시·도민의 공감대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시환 의원

그렇죠?

○교육감 임종식 예.

○김시환 의원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왜 나왔는가 하면 경제 부분입니다. 특히 경제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교육 부분, 거기에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고 지방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좋은 교육과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감 임종식 예.

○김시환 의원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앞으로 이 행정통합 논의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교육감님은 행정통합 시에 우리 경상북도의 교육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에 따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기약 없는 먼 미래가 아닌 우리에게 곧 닥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행정통합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한 번 더 교육감님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교육방향과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임종식 예.

○김시환 의원

따라서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행정통합과 함께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한 창의형·융합형 미래인재 육성도 박차를 가해야 되지요? 4차산업 시대를 맞아 교육도 주입식 교육이라는 과거의 관성에서 탈피하여 놀이와 학습, 토론 중심 등의 창의와 사고력 중심으로 교육을 혁신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의원

옛날에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은 공자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놀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임종식

일단 수업은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수업이 재미있으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수업이 그게 좋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들이 유치원에서 올라와서 바로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놀이학기제라는 그런 학기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의원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육은 과거에 관성적으로 하는 주입식이 아닌 놀이로 해야 된다, 그렇죠? 체험형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교육감 임종식 예.

○김시환 의원

그것이 올 신년사에서 창의형·융합형 미래인재를 육성할 것이라고 공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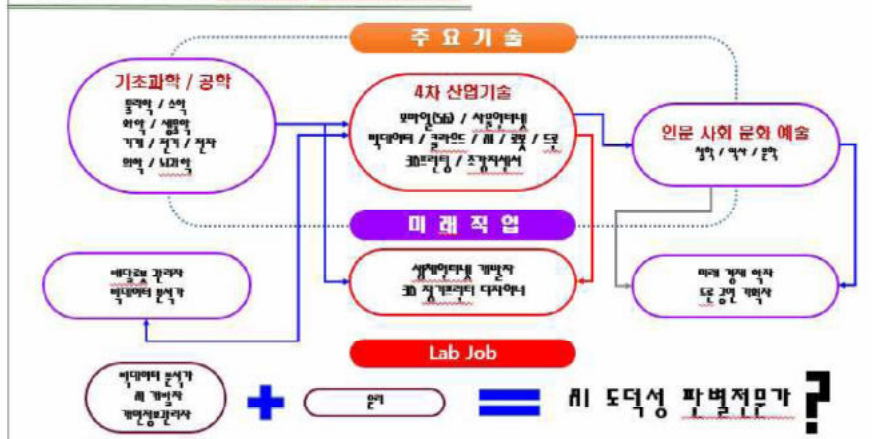
맞습니다.

○김시환 의원

부연하여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 켜 주십시오.

4차산업혁명과 모듈형 체험학습관



이 슬라이드는 4차 혁명과 모듈형 체험학습관입니다.
이 모델은 저기에 주요 기술된 부분에 있어서 놀이로 가는
겁니다.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김시환 의원

여기에 대해서 느낀 점...

○교육감 임종식

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보면 그렇고,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이해가 빠르고 또 즐겁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AI지원센터도 개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메이커교육관을 지금 구미에 지난해 7월에 오픈해서 하고 있고, 또 수학교 수학교육관, 안전도 안전체험관, 전부 체험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교실도 마찬가지로 현재 모든 교실에 무선망을 설치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시환 의원

그래 본 의원이 이 슬라이드를 비춘 것은 기초과학과 공학, 인문학과 사회·문화·예술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융합됩니다.

○교육감 임종식

맞습니다.

○김시환 의원

한 곳에서 만납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그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엔터테인먼트의 체험관 기준은 젊고 나이가 많고 하는 것보다도 누구나 와서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고, 교육감님이 얘기하신 각 파트 부분에서 경북교육에서 하시는 부분 부분적으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 속에는 윤리가 살아 있고 도덕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인성역량이 가장 우선입니다.

○김시환 의원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윤리와 도덕 부분이지요, 그렇죠? 그 인성의 기반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교육 아닙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교육에서, 미래교육에서도 우리가 정보화능력보다도 인성역량,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잡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의원

본 의원이 느끼기에 교육은 지식으로 하는, 머리로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합과 도덕성과 윤리성과 그것을 높여서 가슴으로 하는 것 맞지요?

○교육감 임종식

맞습니다.

○김시환 의원

현재 우리 교육으로 보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인성을 배양시키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각 분야의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하는 '스팀' 하는, 그 메이커교육에 스팀이 있네요, 스팀?

○교육감 임종식 예.

○김시환 의원

그러한 부분을 높여서 이것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성으로 AI하고 결합시키느냐 하는 것이 미래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미래의 과제는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이 대단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다른 인간만이 가진 역량들을 키워야 되고, 또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뒤쳐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함께 조화롭게 활용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한...

○김시환 의원

그래 본 의원은 인공지능과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도덕성이라는 말입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동의합니다.

○김시환 의원

다음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재 모습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분류기준에 따라 조금 상이하겠지만 현재경북교육은 네 가지 정책 방향, 스무 가지 핵심과제 중 5개의 핵심과제가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과 연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역시 교육·학습활동 지원예산 3,068억 원 중 과학교육 활성화 등 창의인재 교육예산은 152억 원으로 약 4.9%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과학교육과 창의융합교육, 메이커교육, 발명교육 등 유사한 교육프로그램들은 통합 운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임종식

예, 모든 메이커교육이나 수학체험이나 발명체험관들을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시환 의원

저 또한 본 의원이 느끼기에 우리 교육감님은 경상북도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십시오.

○교육감 임종식

고맙습니다.

○김시환 의원

이제 도정질문을 마무리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상황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국가와 지자체 간, 광역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이 필요
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사항들을 깊이 헤아리시고 심기일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1년 4월 23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임무석 의원(농수산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질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행복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460일이 되는 날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기운 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질문에 앞서, 지사님! 어제 있었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에서 서산~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계획 등 우리 경북도가 요청한 계획들의 대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신 우리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도 집행부 관계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중에 있을 확정계획에 반드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대학 소멸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대학들은 올해 신입생을 모두 충원하지 못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안동대는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99.9%에서

72.9%로 대폭 떨어졌으며, 대구대 80.8%, 동양대 81%, 대구가톨릭대 83.8%, 경북전문대 87%로 경북에 소재한 대학의 등록률이 80%대에 머물렀습니다. 동양대에 이어 동국대 경주캠퍼스도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경북의 대학생 중 학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옮겨간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은 5.8%나 됩니다.

지역대학들은 학과 통폐합 및 신입생 정원 줄이기, 대학 간 통합 추진, 수도권 분교 설치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대학 자체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지역대학의 위기를 지역의 중대한 현안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하여 대학교육을 지방행정의 특화된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광주대학발전협력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협력단에서는 광주시를 구심점으로 지역 공동체가 신입생 모집, 학사 운영, 취업, 연구활동 지원, 청년 일자리 정책까지 총괄 관리해 지역대학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의 15개 대학과 실무단을 구성하고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육성, 협력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탈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대학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 신입생 미달, 학업 중도 탈락생 증가로 대학 주변 상권은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빈 방이 늘어나고 영업 부진으로 상가가 줄줄이 폐업하면서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지역에 대학생들 충원하지 못하면 대학 주변 상권은 몰락하고 지역경제는 동반 침체할 것입니다.

지역대학이 곧 지역 경쟁력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지역

거점 대학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루
속히 경북도가 경북교육청, 대학, 지역기업들과 연계·협력
해서 지역대학의 소멸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지역대학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과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도지사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북은 출산율 저하, 젊은 세대의 수도권 유출, 고령
인구 증가로 생산인구 수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저하되
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소멸 위험 지구로 조명
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사람이 살지 않고 빈 집이
늘어나고 마을이 사라지고 시·군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통계로 나타나는 경북의 현실은 암담하다 못해 절망적
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를 보면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2%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
됐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 82.6%가 소멸
위험 지역이고, 그중 7개 시·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
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인구는 2021년 3월 기준 263만 5,563명으로 줄어들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2020년 도내 사망자 수는 2만 2,818명인
데 출생자 수는 1만 2,878명으로 작년 한 해에만 1만 명
의 인구가 자연감소 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영주시 문수면의
경우인구가 1,948명인데 작년 한 해 1명의 아이도 태어나
지 않았고 4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현상이 비단 문수면만의
현실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북이 처한 현실이다, 본 의

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말 기준 경북에서 타 시·도로 3만 1,770명이 전출했습니다. 대구로 4,054명, 경기로 2,258명, 서울로 1,857명, 부산으로 1,183명 등 대도시권으로의 전출이 많았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학생 수의 추이를 보면 전체 학생 수는 34만 5,747명에서 25만 8,477명으로 8만 7,270명, 24.24%가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은 15만 5,146명에서 12만 9,079명으로 2만 6,067명, 16.80%가 줄었고, 중학생은 9만 3,999명에서 6만 2,499명으로 3만 1,500명, 33.51%가 줄었습니다. 고등학생은 9만 6,602명에서 6만 6,899명으로 2만 9,703명, 30.75%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도내 학생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고등학생의 감소 폭이 초등학생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중·고등학생의 감소는 자연감소가 아니라 더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타 시·도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인위적인 감소라고 생각됩니다.

통계청 2019년 17개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현황을 보면 서울이 2,344만 원인데 경북은 1,861만 원으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북은 전국 평균 2,040만 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도내 혼인 건수는 2019년 1만 637건에서 2020년 9,046건으로 무려 15%나 줄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젊은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인구 감소와 경제적인 빈곤은 지방소멸과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통계들이 지금 경북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고 경북의 미래를 짐작하게 합니다.

지사님, 경북의 미래를 창조하여 주십시오. 지금 당장 경북 소멸 위기의 대응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북도에서 지난해 인구정책과와 지방소멸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2021년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됩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경북도의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산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이 산불 발생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현장 중심의 도정을 위해 매년 수만km를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앙고속도로, 이 길을 다니시며 산불로 새카맣게 탄 민둥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2020년 70.3%, 2021년 현재까지 64%, 전국 산불 피해 면적에서 우리 경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산불 피해 면적은 경북이 2,492ha로 두 번째로 피해가 큰 강원도의 10배에 달합니다. 2020년 4월에 발생한 안동 풍천 산불은 피해 면적이 1,944ha, 피해액 793억 원, 피해 복구비는 490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발생한 임동 산불은 피해 면적이 307ha이며, 피해액과

피해 복구비는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먼저 안동에서 연이어 발생한 두 차례의 대형 산불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에 물어야 합니까, 도지사님께 물어야 합니까? 그리고 지난 한 해 엄청난 산불 피해를 입고도 올해 또 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을 보면 경북도의 산불 대비 태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경북에서만 대형 산불이 매년 발생하고, 피해가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산림청의 '2021년 K-산불 방지 대책'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대형 산불 발생 시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협조하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구성하고 현장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안동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방지 대책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수십 년을 애써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대형 산불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년 발생한 전국 산불 37건 중 90% 이상이 실화나 쓰레기를 소각하다 발생한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사님, 경북도의 산불 예방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안동 풍천·임동 산불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산림 복구 현황과 향후 계획,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열대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1.7도가량 상승하면서 사과,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생육 한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열대 작물 재배가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제주 특산물이던 한라봉은 경북 최북단 영주 소백산 자락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 농작물 주산지 이동 현황에 따르면 2060년대, 즉 40년 후에는 경북에서 사과 재배가 어려워지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귤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아열대 과수 및 채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아열대 과일 수입액은 2010년 2,100억 원에서 2018년 1조 5,635억 원으로 7.5배가 증가했습니다.

2021년 경북도의 아열대 작물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재배 농가 수 171호, 재배 면적 37.47ha, 20여 개 품목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한라봉, 레드향, 황금향, 바나나, 망고 순입니다.

도내 과수 및 채소 재배 농가에서도 아열대 작물 등 대체 품목에 대해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도의 지역 환경에 적합한 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2018년 도지사 공약으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 연구단지 조성을 전국 최초로 제시해 지난해 6월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를 360억 전액 국비사업으로 유치했으며, 올해부터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미래농업대학 아열대학과를 개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과 기후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기 위한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열대작물의 보급 확대는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 부분의 선제적인 대응과 농가 신소득 창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으로 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행히 경북도에서도 아열대작물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하면 준비나 대응 이 늦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경북도의 아열대작물 육성 및 지원대책과 농업 분야 기후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님 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 안전성검사연구소 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인삼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검사와 중금속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소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영주, 봉화를 비롯한 인삼 재배 농가나 인삼 가공업체들은 농산물 안전성검사 및 자가품질 검사 인증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충남 금산, 전북 진안 홍삼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인삼 재배농가와 인삼 가공업체들은 인증성적서 발급에 시간, 거리, 비용이 많이 들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기는 우리나라 인삼 최초 시배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북 전 시·군에서 인삼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2019년 인삼재배 통계를 살펴보면 재배 농가수 1,073호, 재배면적 1,661ha, 생산량 2,346톤, 생산액은 804억 원입니다.

경북도에서도 인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에 인삼의 유효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품질분석실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분석한 자료를 인삼 재배농가와 인삼 가공업체에 참고용으로만 제공할 뿐 유효한 인증서로서의 효력이 없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풍기인삼의 명성을 살리고 안전성 확보와 지역 인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인된 농산물 안전성검사

및 자가품질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연구소의 설치나 검사기관 지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제931호선 선형개량 및 확·포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서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931호선 선형개량 및 확·포장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방도 제931호선 영주시 봉현면에서 예천군 감천면 18km 구간은 도로가 좁고 굴곡이 심해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물고 다니고 겨울에 눈이 내리면 통행을 포기해야할 정도의 위험한 도로로 매년 1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10월에 조사한 지방도 931호선 봉현면 오현리 유통센터 앞의 1일 교통량은 1만 1,253대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숙원사업으로 교통량이 많고 위험한 18km 구간의 선형개량과 4차로 확장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경북도에서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와 유전리 간 4개 공구 2.1km에 총사업비 27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형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토지 감정평가와 토지 보상협의를 마친 후 11월에 공사에 착공해 2023년 10월에 준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향후 토지보상 협의 등의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선형개량사업의 기한 내 완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낙후된 북부권 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와 유전리 간 선형개량

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18km 구간의 4차로 확·포장, 그리고 지방도 931호선 영주 봉현에서 예천 감천 구간의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II. 5분 자유발언

□ 2021년 5월 6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이동업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관련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인류의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전 세계의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WWF), 경제평화연구소 등에 따르면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로 지난 50년간 동물 개체 수의 70%가 감소하였고 2050년 전 세계의 12억 명 이상이 난민이 되고 극심한 물부족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되는 등 이제 환경 문제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류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재앙적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 생존의 답은 바로 환경교육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는 환경교육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

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해 배우고 환경친화적 행동을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단위의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학교환경교육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 등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제3차 국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환경교육은 매우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환경과목이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운영되다 보니 입시경쟁논리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환경과목의 선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데 있습니다.

경북 도내 초·중·고 환경과목 선택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며, 중학교는 전체 259개교 중 24개교로 10%도 채 되지 않으며, 고등학교는 47개교로 전체 185개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이들 학교는 주 1회 한두 시간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환경과목을 가르쳐야 할 정규 환경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도내에 단 한 곳도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현장에서의 환경교육은 환경교과와 전혀 상관이 없는 비전공교사가 환경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모든 학교가 최소한 주 2시간 이상의 환경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임종식 교육감님의 결단과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권한은 교육부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도교육청이 도내 30여만 명의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의무적인 환경교육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난해 7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문’을 채택하고 지난 3월 협의회 산하 기후환경위원회가 출범한 것도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육부·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환경교육의 필수과목 편성에 대한 강력한 건의 등을 통해 내실 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별 1인 정규 환경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1교 1환경교사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내실 있는 환경교육으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포항 영일교의 경우 주 2시간씩 환경교육, 토론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교육의 작은 물결이 경북의 모든 학교, 나아가 전국, 전 세계가 동참하는 큰 파도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30건)	107
☐ 동 의 안(5건)	281
☐ 결 의 안(1건)	297

二 조 례 안 二

-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춘우 의원('21. 4. 12)
-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
박차양 의원('21. 4. 12)
-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21. 4. 12)
-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희 의원('21. 4. 12)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1. 4. 12)
-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1. 4. 12)
-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지사('21. 4. 12)
-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21. 4. 12)
-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나기보 의원('21. 4. 12)

-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1. 4. 12)
-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1. 4. 12)
-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박태춘 의원('21. 4. 12)
-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곽경호 의원('21. 4. 12)
-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광택 의원('21. 4. 12)
-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승오 의원('21. 4. 12)
-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대일 의원('21. 4. 12)
-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
남용대 의원('21. 4. 12)
-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현국 의원('21. 4. 12)
-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신효광 의원('21. 4. 12)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춘우 의원('21. 4. 12)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도 의원('21. 4. 12)
-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춘우 의원('21. 4. 12)
-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김시환 의원('21. 4. 12)
-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21. 4. 12)
-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도 의원('21. 4. 12)
-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배한철 의원('21. 4. 12)
-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최병준 의원('21. 4. 12)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광택 의원('21. 4. 12)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21. 4. 12)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21. 4. 12)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물류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2. “지역물류산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구역의 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물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류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

2항에 따라 경상북도 물류기본계획(이하 “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
4. 지역의 물류시설·장비의 수급, 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
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
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
7. 지역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보급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 촉진·지원
10.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
11.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 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물류산업의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2. 지역물류산업 관련 기술개발

3. 지역물류산업 실태조사, 통계관리 및 연구사업

4. 지역물류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지역물류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물류시설 조성 지원) ① 도지사는 물류 인프라 확충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물류터미널, 스마트물류센터,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시설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류터미널, 스마트물류센터,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업 등의 유치·지원) ① 도지사는 물류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본사·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도내에 이전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물류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류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의 장려 등) ① 도지사는 지역물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지역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물류산업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지역물류산업 육성과 물류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물류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류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지역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에 설치·운영되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경상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시설”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2. “방사선비상”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방사능 비상을 말한다.
3. “방사능재난”이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 재난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

안전법」 제2조 및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사능 재난 및 피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원자력 안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
2. 원자력시설 인근지역 도민의 안전 확보
3.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감시
4. 정부, 인근 시·군, 원자력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5. 원자력 관련 정보공개 및 도민 의견수렴
6. 방사능재난 방지 교육 및 훈련
7. 방사능방재에 관한 연구개발
8.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
9. 그 밖에 원자력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검증 등) ① 도지사는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증할 수 있다.

1. 원자력시설로 발생하는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 확인
2. 원자력시설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3. 그 밖에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이하 “원자력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1.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보낸 고장·사고 등 관련 공문서
2. 각 시설에서 발생한 비정상 상태에 관한 문서 및 자료
3. 그 밖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도민에게 적극 공개해야 한다.

제7조(방사능재난 시 주민보호조치) 도지사는 방사능재난 시 도민의 대피, 소개(疏開) 등 긴급 주민보호조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의 장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절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경상북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른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 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중복감사의 방지)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 임명과 동시에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은 2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경상북도, 위원회, 경상북도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으로 실무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를 적용한다),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급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예산) ①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의 3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에게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
북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
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제2조제1항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 예방진단팀(CPO)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제도 시행 ③ 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 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①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 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 순찰 등)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 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청소년· 노인·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 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노인·장 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 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 활동(교육·홍보 등) 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 (가·피해자 조사 등)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나) 아동·청소년· 노인·여성·장 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 대응 활동	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 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 수색 운영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기타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법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 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 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가정폭력 사안대응(협업회의 참석, 가·피해자 조사 등) ⑤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바)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폭위 참석, 117사안대응, 가·피해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5) 주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 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 질서 유지	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①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단속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 관련 112 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죄,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6)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 에서 주민의 생명· 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다) 유실물 보관· 반환·매각·국고 귀속 등 유실물 관리	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경찰관 직무집 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① 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하거나 경찰관서 임시보호 등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 신고 처리 등	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기타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 (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점검·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관련 조치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② 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의 심의·결정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 관리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 설치·관리· 운영	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 관리·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② 교안, 리플릿 등 교육자료 제작· 배포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①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 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나) 도로공사 신고 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 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바)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대행 법인 등 지정	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 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 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다) 지역교통정보 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 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①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 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마) 지역 내 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① 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상 안전진단, 사고 조사 관련 협의 ④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 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비고 :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2]

수당의 지급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참석수당

구분	단위	기준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 기본료: 150,000원 · 초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만 지급한다.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 위원회
예산 범위에서 사전 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가능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21년 4월 27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침해 우려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범위를 신설 정비하고자 제안함.

2. 주요 내용

-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을 개정할 경우 경상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임의규정으로 함(안 제2조제2항)
-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 별표1의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중에서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에 있어 시설 내 학대 점검사항은 지자체 업무와 중복의 우려가 있어 삭제 조정함(별표1 가목4)가)②)

3. 수 정 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2항 중 “경상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경상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하고,

○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안 제7조는 제8조로, 안 제8조는 제9조로, 안 제9조는 제10조로, 안 제10조는 제11조로, 안 제11조는 제12조로, 안 제12조는 제13조로, 안 제13조는 제14조로, 안 제14조는 제15조로 한다.

○ 별표 1 가목4)가)의 ②중 “시설 내 학대 점검”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u>경상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③ (생략) (신 설)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경상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u> ③ (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 정 안	수 정 안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 ③ (생략)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u>제8조</u> (간사) ① ~ ② (생 략)	<u>제9조</u> (간사)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u>제9조</u> (운영세칙) (생 략)	<u>제10조</u> (운영세칙) (제정안과 같음)
<u>제10조</u> (위원의 수당) ① ~ ② (생략)	<u>제11조</u> (위원의 수당)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u>제11조</u> (위원의 여비) (생 략)	<u>제12조</u> (위원의 여비) (제정안과 같음)
<u>제12조</u> (지급 절차 등) (생 략)	<u>제13조</u> (지급 절차 등) (제정안과 같음)
<u>제13조</u> (예산) ① ~ ② (생 략)	<u>제14조</u> (예산)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u>제14조</u>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생 략)	<u>제15조</u>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제정안과 같음)

[별표 1.] <제정 0000. 00. 00.>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제2조제1항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사실·내·학대 점검, 가·피해자 조사 등)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란 버스 차량 내부와 외부에 설치되어 음성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서,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노선정보,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5조제1항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를 “법 제11조”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도입·운영) ① 도지사는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의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
2.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도입을 위한 운전기사, 담당 공무원, 버스조합이나 업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사전 교육
3. 운행 중 좌석 착석 및 버스 수직손잡이를 잡도록 적극 유도하는 등 안전 유지를 위한 안내방송 실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에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저상버스”를 “저상버스 및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버스정류장에 시각장애인 승차 대기장소를 마련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 치”란 버스 차량 내부와 외부에 설치되어 음성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서, 장애인, 노 인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노선 정보,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u><신 설></u>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 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 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 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군,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 - 법 제11조————— —————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도입·운영) ① 도지사는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의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 2.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도입을 위한 운전기사, 담당 공무원, 버스조합이나 업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사전 교육 3. 운행 중 좌석 착석 및 버스 수직손잡이를 잡도록 적극 유도하는 등 안전 유지를 위한 안내방송 실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u>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는 노선버스</u> 운송사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13조(교육)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별도의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u>도지사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에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u> 제12조(재정지원) ① ————— ————— <u>저상버스 및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u>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u>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버스 정류장에 시각장애인 승차 대기 장소를 마련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필요한</u> ————— ————— —————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5조까지 및”을 “제116조까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9조”를 “제9조·제9조의2”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을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사업소의 장”을 “사업소의 장, 합의회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사업소”를 “사업소·합의회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에 대해 성과지표 달성 여부, 행정수요 지속 여부, 기능수행의 효율성 여부 등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 성과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 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장제1절을(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합의제 행정기관

제1절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제74조(설치) ① 법 제116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75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 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17. 그 밖에 도지사, 경상북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76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단장 및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단장 및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등)	제2조(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등)	제2조(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등)
제3조(과·담당관등의 설치) 도 본청·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의 국(부)·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등의 설치) 도 본청·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의 국(부)·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등의 설치)	제3조(과·담당관등의 설치)	제3조(과·담당관등의 설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에 대해 성과지표 달성 여부, 행정수요 지속 여부, 기능수행의 효율성 여부 등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 성과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6장 합의제행정기관
<신 설>	제1절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신 설>	제74조(설치) ① 법 제116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5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 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 상북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 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 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현 행	개 정 안
	9. <u>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u> 10. <u>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u> 11. <u>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u> 12. <u>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u> 13. <u>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u> 14. <u>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u> 15. <u>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u> 16. <u>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u> 17. <u>그 밖에 도지사, 경상북도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6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u> <u>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u> <u>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u> <u>장을 둔다.</u> <u>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u> <u>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u> <u>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u> <u>지휘·감독한다.</u> <u>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u> <u>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500명”을 “7,87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245명”을 “2,25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5,095명”을 “5,43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17명”을 “123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22명

제4조 중 “사업소”를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9급	전문 경력관
비 율	6% 이내	19% 이내	33% 이내	36% 이내	5% 이상	1% 이내

비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6명(4급 1, 6급 2, 7급 3)은 제외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20% 이내	80% 이상	38% 이내	62%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9급상당
비 율	25% 이내	55% 이내	20% 이상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4.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8% 이내	9% 이내	16% 이내	30% 이내	33% 이상

[별표 3]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기 관 별 직 급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 기관	경제 자유 구역청
합 계		7,874	-						
정 무 직		3	1					2	
일 반 직	소 계	2,103	-						
	2급	1				1			
	2~3급	2	1	1					
	3 급	12	9		1	2			
	3~4급	2	2						
	4급	97	63	9	5	9	9	1	1
	5급 이하	1,975	-						
	전문경력관	14	-						
별 정 직	소 계	17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3	-						
연 구 직	소 계	242	-						
	연구관	44			43		1		
	연구사	198	-						
지	소 계	30	-						
도 직	지도관	10			10				
	지도사	20	-						
소 방 직	소 계	5,436	-						
	소방정	25	6		19				
	소방령 이하	5,411	-						
교 원	소 계	43	-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7,500명</u> 으로 하며, 다음 각 호 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7,874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2,245명</u>	1. ————— : <u>2,250명</u>
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5,095명</u>	2. ————— : <u>5,436명</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17명</u> 〈신 설〉	4. ————— : <u>123명</u>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u>22명</u>
제3조(정원채정기준) (생 략)	제3조(정원채정기준) (현행과 같음)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u>사업소</u> , 경 제자유구역청 등 정원관리기관 별로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 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 ————— <u>사업소</u> , 합의제행정 기관, ————— ————— ————— ————— ————— —.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 원의 규정) (생 략)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의 규정) (현행과 같음)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3
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4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5조의7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4
조의4제3항”을 “영 제5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6조의4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u>	<u>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창조 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_____ _____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 7제2항_____ _____ _____.
제2조(행정지원 등) ① 경상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 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과학 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24조의4제4항에 따 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 다.	제2조(행정지원 등)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7제3항— _____ _____.

현행	개정안
② 도지사는 영 제24조의4제3항에 따라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경상북도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영 제5조의7제2항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영 제4조의7제4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_____ _____ _____. ②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
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경상북도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2.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 수어 통역, 문자 통역(속기)
 3.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4.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5. 그 밖의 각종 장애인 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 지원
- ② 도지사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장애인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1년 4월 26일

제 안 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가
설치·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안 제6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 설치)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의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이하
생략)”을 “설치·운영한다.”로 수정함.

3. 수 정 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설치·운영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비고
제6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 리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설치·운영할 수 있</u> <u>다. 다만, 위원회는 「경상북</u> <u>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u> <u>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u> <u>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u> <u>서 대행한다.</u>	제6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 리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설치·운영한다.</u>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7명”을 “9명”으로, “법관, 교육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경상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u>11명</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조(구성) ① ----- ----- ----- ----- <u>13명</u> ----- --. ----- ----- -----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 ----- -----.
1. <u>7명</u> 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1. <u>9명</u> -----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공무원 등”을 각각 “공무원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도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보상금”이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3.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다.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고) 누구든지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조리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다 긴 기간으로 한다.

1.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2.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적절 하다고”를 “부적절하다고”로 한다.

2. 제3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된 사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_____ 공무원등_____ _____ _____ 공무원등_____ _____ _____.
제2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보상금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도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

현행	개정안
<u>행위</u> 3. <u>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u>	<u>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u> 2. “보상금”이란 공무원등의 부조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3.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다.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u>제3조(신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u>	<u>제3조(신고) 누구든지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0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자체규정에 의한 자체규정에 의한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신고된 사항	제3조의2(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조리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다 긴 기간으로 한다. 1.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2.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 제10조(보상금의 지급제외)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된 사항

현행	개정안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u>부적절하다고</u> 인정되는 사항	9. 그 밖에 _____ _____ <u>부적절하다고</u> _____ _____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상북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 진흥의 추진목표와 방향
2. 전통무예 진흥 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규모
3. 전통무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 전통무예지도자,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활동
3.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4. 전통무예 관련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통무예단체에게 보조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하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원
의 설립·운영과 지방문화원 및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문화원”이란 지역 문화를 진흥하는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란 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경상북도지
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지방문화원 및 경상북도문화원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 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 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 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 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설립 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분원의 설치)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현황

③ 도지사는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인 경우를 포함한다)
4. 전시실
5. 도서실

제7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장과 지방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와 지방문화원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연합회장과 지방문화원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다른 지역의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지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공유재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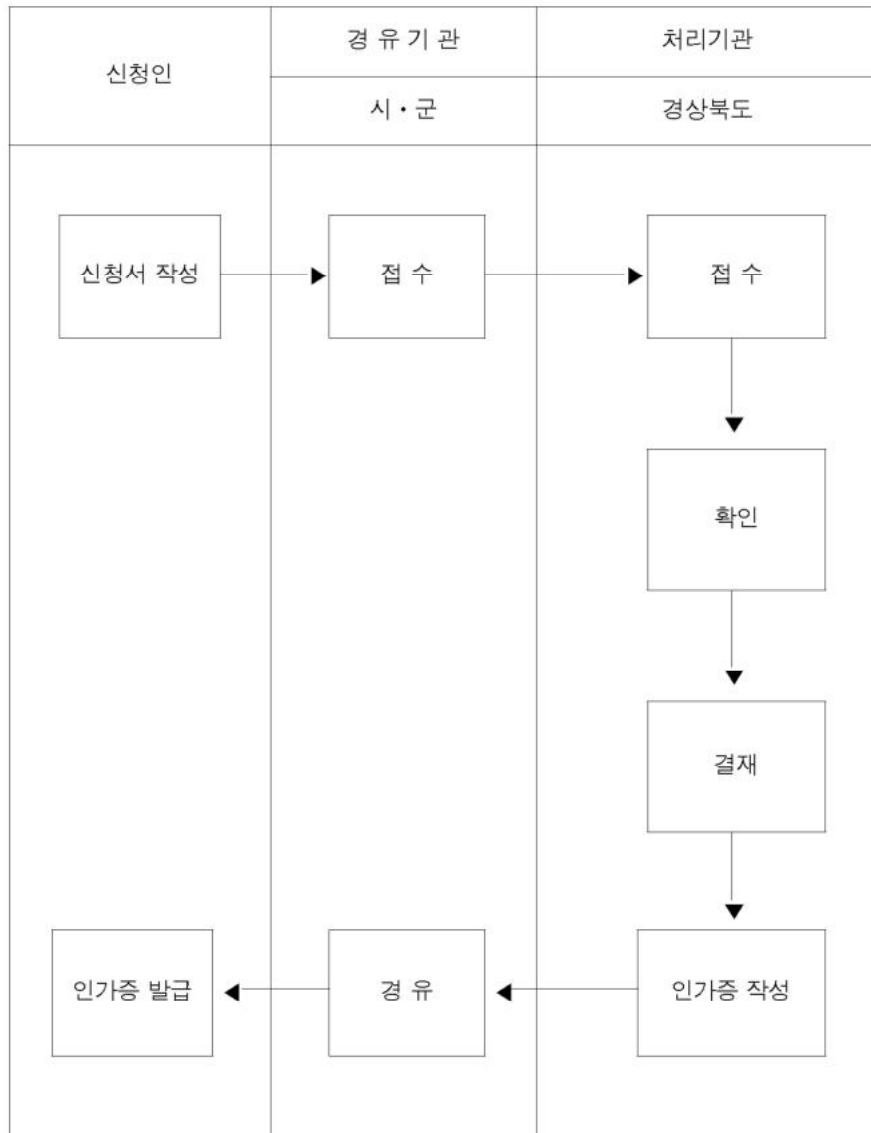
신청인 첨부서류	1. 설립 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1. 명 칭:
2. 소재지:
3.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 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본원		대표자 성명	
		분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분원 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 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 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 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 시설현황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 인가증

1. 명 칭:

2. 소재지

본원	
분원	

3.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고유 역사문화 자원인 유교, 신라, 가야 3대문화권의 지속적인 진흥을 통해 문화관광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3대문화권”이란 유교, 신라, 가야의 역사문화자원을 말한다.
2. “경상북도 3대문화권 사업”이란 경상북도 3대문화권의 문화생태관광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3.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2.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3. 경상북도 3대문화권 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원
4. 경상북도 3대문화권을 활용한 주민사업체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적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호협력)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을 경우에 시장·군수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을 포함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경상북도 3대문화권 사업(제2조제2호 관련)

시 군 별	사 업 명
포항	1. 신라문화탐방 바닷길(연오랑, 일월신화) 2. 동해안 연안녹색길
경주	1.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2. 신라금속 공예지국
김천	1. 황악산하야로비공원 2. 무흘구곡경관가도
안동	1.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2. 한국문화테마파크 3. 선성현 문화단지 4. 유림문학 유토피아 5. 전통 빛타래길쌈마을
구미	1. 초전지 역사로드(초전지, 디지털역사) 2. 낙동강역사너울길
영주	1. 한국문화테마파크 2. 무섬지리문화경관
영천	1.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2. 동의 참 누리원
상주	1. 낙동강이야기나라(자전거, 낙동강역사) 2. 거꾸로옛이야기숲 3. 태평성대경상감영
문경	녹색문화상생벨트

시 군 별	사 업 명
경산	1.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2. 동의 참 누리원
군위	삼국유사가온누리
의성	1. 신라본 역사지움(최치원, 조문국) 2. 비룡산푸른문화길
청송	술누리 느림보 세상(장난끼, 탐방로)
영양	1. 산촌문화 누리터 2. 음식디미방
영덕	1. 낙동정맥역사문화산수길 2. 동해안연안녹색길
청도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고령	1. 가야국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개발 2. 낙동강역사너울길
성주	1. 가야국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개발 2. 무흘구곡경관가도
칠곡	낙동강역사너울길
예천	녹색문화상생벨트
봉화	1. 세계유교문화공원 2. 누정휴 문화누리
울진	1. 금강송 에코리움 2. 수도문화나라
울릉	수도문화나라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환경업무 담당국장, 농축산업무 담당국장, 건설도시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

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자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경상북도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
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경상북도환경정책위
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도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도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경상북도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사회환경교육·체험환경교육의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8.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관리
9.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 제출) ① 도지사는 법 제6조 및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환경교육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노동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의 민간단체, 시·군,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및 조정
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환경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우수사례) 도지사는 효과적인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찾아내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경상북도교육청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상북도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하여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금”이란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의 소금을 말한다.
2. “소금산업”이란 법 제2조제12호의 산업을 말한다.
3. “소금사업자”란 소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소금제조업자”란 법 제2조제14호의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

다)는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생산과 품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
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
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 등) ① 도지사는 소금 제조기술 보급,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의 교육을 위하여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
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
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해외수출 촉진) 도지사는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전통생산방식의 보전·계승) ① 도지사는 소금제조업자가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전통적·문화적 전승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식(이하 “전통생산방식”이라 한다)의 보전·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생산방식의 보전·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소
득을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만 65세 이상이며 농가당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
하고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

가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농산물유통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영농을 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으로 한다.
- ② 다품목의 농산물을 소량으로 생산하여 유통하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같다.

1. 면(마을)단위 농산물 유통거점 구축 및 조직화
2. 농산물유통 마케터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3. 농산물 상품화 소규모 유통시설 확충, 상품패키지 개발
4. 온·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체계적
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사업을
말한다.
2.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
넌스를 구축하고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
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농촌재생뉴딜사업”이란 농촌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여

생활여건 개선과 난개발 요소 정비, 농촌다움 회복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지역발전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5.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자원을 테마로 휴식·휴양 및 체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도농교류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이란 귀농·귀촌을 통해 농촌으로 돌아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농촌유희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이란 농촌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농촌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이웃사촌행복소통 마을사업”이란 농촌의 소통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매체 등을 활용하여 주민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문화복지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중간지원조직”이란 농어촌지역의 공동체성 회복 및 상향식 지역개발을 위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2. 주민주도 상향식 농어촌지역개발
3. 주민과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구축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발전 및 균형 있는 농어촌지역발전
6.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365생활권' 구현
7. 지역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 향상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 및 시행 계획 협의 등) 도지사는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제59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경우 미리 시장·군수에게 협의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협약제도
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4. 신활력플러스사업
5.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6.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7. 농촌재생뉴딜사업
8. 이웃사촌 행복소통 마을사업
9. 농촌유희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10. 행복마을만들기 기반시설 확충사업
11. 마을만들기사업
12. 중간지원조직 운영
1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후운영관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사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후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대학교 등에 사업 분석·평가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 사회발전과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도 단위 중간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대상 지역 활성화 교육 및 컨설팅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4. 농어촌지역개발 신규 공모사업 발굴
5. 농촌재생뉴딜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협의 등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시 사업계획 자문 및 평가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기관·단체·대학·연구소 등에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조직의 구성) ① 도지사는 농어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지원조직의 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조직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인력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북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귀농어·귀촌 관련 연차별·재원별 투자계획

3.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심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제6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귀촌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업과 도지사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귀농어·귀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마다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2.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 증명서류 제출

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귀농어업인·귀촌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정보 제공
2. 농어업경영 기술 및 교육 훈련, 연수
3. 귀농어업인의 집 운영
4. 농어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등의 지원
5.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민·관 협력 및 컨설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지원 하는 자금이 중복·편중되거나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 사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환동해권 물류거점”을 “환동해권 물류·관광 거점”으로,
“해양 물류산업”을 “항만 관련 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지역 경제”
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
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항로서비스”를 “항로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최초지원”을 “최초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해상화물 운송사업자”를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 하고, “정기 컨테이너 항로서비스”를 “정기 항로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냉동·냉장화물 등 영일만항에”를 “영일만항에”로 한다.

제3조 제목 “(도지사의 책무 등)”을 “(도지사 등의 책무)”로, 같은 조 본문 중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를 “계획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로연장지원금 : 기존에 다른 항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에 연장 또는 변경 기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금
2. 특화항로손실지원금 :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에 특화항로를 개설해 정기적인 항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금
3. 신규항로개설장려금 : 영일만항에 신규로 정기항로를 개설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4. 항만이용장려금 : 영일만항을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장려금
5. 국제물류주선블룸인센티브 : 영일만항을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지원금
6. 특정화물유치지원금 : 영일만항에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지원금
7. 정기여객항로손실지원금 :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과 외국항 간에 정기적인 여객 항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금
8. 정기여객항로유지장려금 : 영일만항과 외국항 간에 정기적인 여객 항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제5조제1항제1호 중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연장지원금”을 “항로연장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특화항로 개설·운영에 따른 운항손실금 보조”를 “특화항로손실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지원금”을 “신규항로개설장려금”으로,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이용장려금”을 “화물이용장려금”으로, “지원하고”를 “지원한다.”로, “1티이유(TEU)당”은 “이 경우, 1티이유(TEU)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국제물류주선화물 볼륨인센티브는”을 “국제물류주선볼륨인센티브는”으로 하고, “처리하는 자에게 지원하고”를 “처리할 경우 지원하며”로, “1만원 이내의 금액으로써 매년 도지사가 포항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1만원 이내로 하고,”로, “이 경우, 각 국제물류주선업자마다”를 “각 국제물류주선업자마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특정화물 유치 인센티브는”을 “특정화물유치 지원금”으로 하고, “1티이유(TEU)당 1만원 이내의 금액으로써 도지사가 포항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를 “영일만항에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화물을 처리할 경우 지원하며,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1만원 이내로 하고,”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기여객항로손실지원금은 포항시장과 정기항로 개설·운항 협약을 체결한 선사에게 유류비, 용선료 등을 지원하며, 연간 손실액의 50퍼센트를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일 부터 3년까지로 한다.
8. 정기여객항로유지장려금은 포항시장과 정기항로 개설·운항 협약을 체결한 선사에게 항차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일 부터 3년까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이용장려금”을 “화물이용장려금”으로, “국제물류주
선화물 볼륨인센티브”를 “국제물류주선볼륨인센티브”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특정화물 유치 인센티브”를 “특정화물유치지원
금”으로, “이용장려금”을 “화물이용장려금”으로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연장지원금과 제1항제2호에 따른 특
화항로손실지원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의 지원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지원기준(제4조 관련)

1. 항로연장지원금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

가. 항차당 100티이유(TEU)미만 적취 시(적취 보조)

-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 =
(추가해상운임 + 항만시설사용료 + 하역비) × 50%
- 지원 물량 = 100티이유(TEU) - 적재 물량

나. 항차당 100티이유(TEU)이상 적취 시(하역비 보조)

-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 = 하역비 × 50%
- 지원 물량 = 적재 물량

2. 화물이용장려금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

구 분	유치물량(6개월간)	지원금액 (원/TEU)
화물이용장려금	1~1,499 TEU 이하	35,000
	1,500~2,999 TEU	38,000
	3,000 TEU 이상	40,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영일만항을 <u>환동해권 물류거점</u> 으로 육성함으로써 <u>해양 물류산업</u>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환동해권</u> <u>물류·관광 거점</u> ----- <u>항만</u> <u>관련 산업</u> ----- <u>지역</u> 경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3의2.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영일만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특화항로”란 포항시장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정기적인 항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국제항로를 말한다.	4. ----- ----- ----- ----- <u>항로 서비스</u> ----- -----.

현행	개정안
5. “1차 연도 화물”이란 <u>최초지원</u> 대상 일부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처리한 화물을 말한다.	5. ----- <u>최초 지원</u> ----- ----- -----.
6. 7. (생략)	6. 7. (현행과 같음)
8. “신규항로”란 <u>해상화물운송사업자</u> 가 신규로 영일만항을 기항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 간에 개설하는 <u>정기 컨테이너 항로서비스</u> 를 말한다.	8. ----- <u>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해상여객운송사업자</u> ----- ----- ----- <u>정기 항로 서비스</u> -----.
9. “특정화물”이란 <u>냉동·냉장화물 등 영일만항에</u>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화물로서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화물을 말한다.	9. ----- <u>영일만항에</u> ----- ----- -----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도지사는 국가의 물류정책 및 <u>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u>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등의 책무) ① ----- ----- <u>계획에 따라</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등) 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u>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② ----- -----.
1. <u>기존의 다른 항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에 연장 기항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손실에 대한 항로연장지원금</u>	1. <u>항로연장지원금: 기존의 다른 항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에 연장 또는 변경 기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금</u>
2. <u>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특화항로 개설로 정기적인 항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운항손실금</u>	2. <u>특화항로손실지원금: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에 특화항로를 개설해 정기적인 항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금</u>

현행	개정안
3. <u>영일만항에 신규로 정기항로를 개설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신규항로 개설 장려금</u>	3. <u>신규항로개설장려금: 영일만항에 신규로 정기항로를 개설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외항정기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장려금</u>
4. <u>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지원하는 이용장려금</u>	4. <u>항만이용장려금: 영일만항을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장려금</u>
5. <u>영일만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지원하는 국제물류주선화물 볼륨인센티브</u>	5. <u>국제물류주선볼륨인센티브: 영일만항을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지원금</u>
6. <u>특정화물 유치에 따른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지원하는 특정화물 유치 인센티브</u>	6. <u>특정화물유치지원금: 영일만항에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지원금</u>
<u><신 설></u>	7. <u>정기여객항로손실지원금: 외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과 외국항 간에 정기적인 여객 항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금</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규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u>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연장지원금</u>은 적재물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고, 각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마다 연간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2. <u>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특화항로 개설·운영에 따른 운항손실금 보조</u>는 포항시장과 정기항로 개설·운항 협약을 체결한 선사에게 유류비, 용선료 등을 지원하되, 연간 운항손실액의 50퍼센트를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일부터 2년까지로 한다.	8. <u>정기여객항로유지장려금</u>: 영일만항과 외국항 간에 정기적인 여객 항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제5조(지원기준 등) ① ----- -----. 1. <u>항로연장지원금</u>----- ----- ----- ----- -----. 2. <u>특화항로손실지원금</u>----- ----- ----- ----- ----- ----- -----.

현행	개정안
3. <u>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신규항로</u> 개설에 따른 지원금은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주 1항차 이상, <u>6개월 이상을 운항한 경우에</u> 지원하며, 항로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동배선의 경우 선복비율에 따라 분할 지원한다. 가. ~ 라. (생략)	3. <u>신규항로개설장려금</u>----- ----- ----- -- 1년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4. <u>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이용장려금</u>은 화물 처리량에 따라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되, 1차 연도는 100퍼센트 지원하고 2차 연도부터는 순증화물은 100퍼센트, 나머지 처리화물은 50퍼센트를 지원하고,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각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마다 연간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4. <u>화물이용장려금</u>----- ----- ----- ----- ----- -----지원한다. 이 경우, 1티이유(TEU)당----- ----- ----- -----.

현행	개정안
5. <u>국제물류주선화물 볼륨인센티브는 반기별 200티이유(TEU) 이상 처리하는 자에게 지원하고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1만원 이내의 금액으로써 매년 도지사가 포항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각 국제물류주선업자마다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u> 6. <u>특정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1티이유(TEU)당 1만원 이내의 금액으로써 도지사가 포항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각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마다 연간 1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u> <u><신 설></u>	5. <u>국제물류주선볼륨인센티브는</u> ----- <u>처리할 경우 지원하며, -----</u> ----- <u>1만</u> <u>원 이내로 하고, 각 국제물류주</u> <u>선업자마다 -----</u> ----- -----. 6. <u>특정화물유치지원금은 영일만</u> <u>항에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u> <u>화물을 처리할 경우 지원하며,</u> <u>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1</u> <u>만원 이내로 하고-----</u> -----. 7. <u>정기여객항로손실지원금은 포</u> <u>항시장과 정기항로 개설·운항</u> <u>협약을 체결한 선사에게 유류</u> <u>비, 용선료 등을 지원하며, 연간</u> <u>손실액의 50퍼센트를 최대 10억</u> <u>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기</u> <u>간은 최초 항로 개설일 부터 3</u> <u>년까지로 한다.</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② (생 략)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u>이용장려</u> <u>금을</u> 지원받는 국제물류주선업자 에게는 제1항제5호에 따른 <u>국제</u> <u>물류주선화물 볼륨인센티브</u>를 중 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u>특정화물</u> <u>유치 인센티브</u>는 <u>이용장려금</u>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u><신 설></u>	8. <u>정기여객항로유지장려금은 포</u> <u>항시장과 정기항로 개설·운항</u> <u>협약을 체결한 선사에게 항차당</u> <u>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u> <u>고,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u> <u>일 부터 3년까지로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 <u>화물이용장</u> <u>려금</u>----- ----- <u>국제</u> <u>물류주선볼륨인센티브</u>----- -----. ④ ----- <u>특정화물</u> <u>유치지원금은 화물이용장려금</u>--- -----.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u>항로연장</u> <u>지원금과 제1항2호에 따른 특화</u> <u>항로손실지원금은 중복하여 지급</u> <u>하지 않는다.</u>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
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전담조직 설치)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조치명령 비용 보조)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건축디자인과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다음 권한 가.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명령 나.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명령 대집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제7조제2항	
---	---	--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경상북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소방특별회계로 본다.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를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를 제8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등) ① 품질점검단은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점검

을 위한 별도의 품질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업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품질점검단의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수당은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전유부분의 점검을 위한 세대수 및 세대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 세대수는 최소 3세대 이상 총 공급 주택수의 1퍼센트(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정수로 절상)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공급 주택 유형별로 비례 배분한다.
2. 점검 세대 선정기준은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 시공 불량으로 인하여 주택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한 세대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1호의 세대수에 따라 선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신 설〉	제4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한다.
〈신 설〉	제5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등) ① 품질점검단은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점검을 위한 별도의 품질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품질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업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6조(품질점검단의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 4제4항에 따른 전유부분의 점검을 위한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생 략)	<u>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점검 세대수는 최소 3세대 이상 총 공급 주택수의 1퍼센트(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정수로 절상)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공급 주택 유형별로 비례 배분한다.</u> <u>2. 점검 세대 선정기준은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 시공 불량으로 인하여 주택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한 세대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제1호의 세대수에 따라 선정한다.</u> 제8조(현행 제4조와 같음)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위생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에 적용한다.

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4.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을 보유한 유치원

제3조(교육감등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 기관의 장은 기관의 화장실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실 시설 유지·관리)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결상태 점검·청소 및 비품 확인·조치: 매일 1회 이상
2. 시설에 관한 정기점검: 분기별 1회 이상
3. 악취 및 해충 등 예방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주 1회 이상 소독.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발생시에는 소독 횟수를 증가할 수 있다.
4. 파손·훼손된 시설 즉시 정비 및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 필요한 조치

제5조(화장실의 시설 및 환경 개선) ① 교육감등은 기관의 화장실 노후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 및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등은 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정제(교체형 액체비누 등), 위생용품수거함(통), 그림, 사진, 화분, 음향장치, 방향장치, 건조장치 또는 물품 등을 비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③ 유치원의 장은 유아·부모·교직원 모두가 사용이 편리하도록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련된 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

제6조(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① 교육감등은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등은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 지정 등) ① 교육감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교육감등은 효율적인 화장실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생들이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 역사의식과 민주시민의 소양을 함양하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라사랑교육”이란 「국가보훈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 문화 창달 노력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나라사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학생들을 위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라사랑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나라사랑교육 내용의 연구개발·보급
3. 나라사랑교육을 위한 교직원 연수 및 역량 강화
4.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5. 그 밖에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나라사랑교육 대면·비대면 체험활동 지원
2. 나라사랑교육 연구회 지원
3. 나라사랑교육 관련 홍보 및 강연회 등 지원
4. 교원의 나라사랑교육 연수 및 역량강화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나라사랑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하여 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과 관련된 공훈선양 시설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폐교”를 이용하여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교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영 제9조제10호”를 “영 제9조제1항제10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심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제16조제5항 단서 중 “30%이상”을 “50%”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
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그 밖에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한다.

제34조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가.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

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하는 경우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내 시·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7조제3호 중 “보일러”를 “가스 및 보일러”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징수 기준(제16조 관련)

시 설 명	사 용 료(원)		비고
	4시간 까지	4시간 초과	
일 반 교 실	5,000원	10,000원	1실당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26,000원	51,000원	
운 동 장	30,000원	60,000원	잔디 운동장의 경우 추가 징수 가능
테 니 스 장	30,000원	60,000원	
수 영 장	1인당 1회 사용료		
	구분	개인	단체
	어른(대학생)	3,000원	2,500원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1,500원
	어린이 및 노인	1,500원	1,000원
	영유아	1,000원	500원
기 타 사 항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지역주민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산출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 용어의 정의

-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단체라 함은 동일팀의 30인 이상을 말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의회회의 업무) ① 심의회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 호에 따른 사항은 본청 심의회에서 심의한다.<단서 신설 2015.12.3 1., 개정 2017.9.21.>		제6조(심의회회의 업무) ①	_____	_____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_____	_____
5. 영 제9조제10호에 따라 교육감 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경우 허가에 관한 사항		5. 영 제9조제1항제10호	_____	_____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_____	_____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심의회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 다.		②	_____	_____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_____	_____

현행	개정안
3. <u>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용도변경·폐지</u> 4. (생략) 제16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 ① ~ ④ (생략) ⑤ 3개월 이상 장기 사용 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사용 시 산출사용료의 <u>30%이상</u>을 감면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 제25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4조 제1항에 따라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3. 심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4. (현행과 같음) 제16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_____ _____ -, _____ _____ _____ 50%를 _____.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4조 제1항에 따라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대부료의 감면) ①·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u>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그 밖에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u> 〈삭제〉 ③ 제1항_____ _____.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27조(대부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_____

현행	개정안
<u>법</u>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제34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u>경우</u>.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u>경우</u>.	_____ _____ _____ _____. 1.·2. (현행과 같음) 제34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_____ _____ _____ _____. 1.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경우</u> 2.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경우</u>

현행	개정안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 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 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교육감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 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 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 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 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교육감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 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 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 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 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때 잔여 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결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 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 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 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 다. 가.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 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 우 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 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 적범위 내

현행	개정안
<u>4. 교육감과 교육감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교육감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3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교육감 이외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u> 〈신설〉 〈신설〉	<u>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익매각하는 경우</u> <u>5.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내 시·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u> <u>6. 농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u>

현행	개정안
<u>〈신 설〉</u>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u>〈신 설〉</u>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4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보일러</u> 운영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3. <u>가스 및 보일러</u> ——— ———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9. <u>취사용 가스 사용료</u>(단, 1급 관사에 한함.)	<u>〈삭 제〉</u>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징수 기준 (제16조 관련)			[별표]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징수 기준 (제16조 관련)		
시설명	사 용 료(원)				비고
	4시간 까지	4시간 초과			
일반교실	5,000원 이상	10,000원 이상			1실당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26,000원 이상	51,000원 이상			
운동장	30,000원 이상	60,000원 이상	잔디 운동장의 경우 추가 징수 가능		
테니스장	30,000원 이상	60,000원 이상			
수영장	1인당 1회 사용료				
	구분	개인	단체		
	어른 (대학생)	3,000원	2,500원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1,500원		
	어린이 및 노인	1,500원	1,000원		
	영유아	1,000원	500원		
기타 사항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 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권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지역주민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산출사용료의 3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				
[별표]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징수 기준 (제16조 관련)				
시설명	사 용 료(원)		비고	
	4시간 까지	4시간 초과		
일반교실	5,000원	10,000원	1실당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26,000원	51,000원		
운동장	30,000원	60,000원	잔디 운동장의 경우 추가 징수 가능	
테니스장	30,000원	60,000원		
수영장	1인당 1회 사용료			
	구분	개인		단체
	어른 (대학생)	3,000원		2,500원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1,500원
	어린이 및 노인	1,500원		1,000원
	영유아	1,000원		500원
기타 사항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 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권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지역주민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산출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 용어의 정의 ○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단체라 함은 동일팀의 30인 이상을 말한다.	※ 용어의 정의 ○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단체라 함은 동일팀의 30인 이상을 말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명”을 “9명”으로,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명”을 “9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공직 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1명</u> 으로 구성하 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 _____ _____ —— <u>13명</u> —— _____ _____ _____.		
1. <u>7명</u> 의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원,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 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 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 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 록 한다.		1. <u>9명</u> —— - <u>판사·검사·변호사</u>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 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호선한다.		② ————— _____ _____.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u>7명</u> 중에서 호선한다.		1. ————— <u>9명</u> _____.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교육과 발명메이커교육”을 “과학기술
교육, 발명교육, 메이커교육”으로, “메이커활동의 대중화”를 “창의
융합교육의 활성화”로 한다.

제31조를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1조) 중 “별표 7”을
“별표 8”로 한다.

제4장제5절(제31조 및 제3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

제31조(설치) ① 유·초·중·고등학교 수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체험활동, 교원연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수학
교육의 대중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의 명칭·위치는 별표 7과 같다.

제32조(센터장)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별표 1의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란 다음에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경북 경주시 첨성로 97
-----------------	---------------

별표 3의 경상북도교육청 예천도서관의 위치란 중 “40-5”를 “40-7”로 한다.

별표 7을 별표 8로 한다.

별표 8(중전의 별표 7)의 제목 중 “(제31조 관련)”을 “(제33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8(중전의 별표 7) 제6호의 사무분장란 중에 “9. 그 밖에 제15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10. 그 밖에 제15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9.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운영”을 신설한다.

별표 8(중전의 별표 7) 제10호에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육지원청 수학체험 센터장	1. 수학체험센터 시설·설비와 장비 유지관리 2. 수학체험센터 사용허가 및 장비대여 3. 수학체험센터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수학체험활동 자료 제작·보급 5. 수학체험센터 사용자 안전 및 보건·위생 6. 그 밖에 제31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	---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31조제2항 관련)

수학체험센터명	위 치
경상북도교육청 안동수학체험센터	경북 안동시 풍천면 지풍로 1434-1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설치) ① 유·초·중·고등학교 과학기술교육과 발명메이커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학생실험실습, 교원연수, 과학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과학의 생활화와 메이커활동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5조(설치) ① ————— 과학기술교육, 발명교육, 메이커교육————— ————— ————— 창의융합교육의 활성화—————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절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
〈신 설〉	제31조(설치) ① 유·초·중·고등학교 수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체험활동, 교원연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수학교육의 대중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를 둔다.
〈신 설〉	②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의 명칭·위치는 별표 7과 같다.
	제32조(센터장)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사무 분장) 본청 국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의 사무 분장은 별표 7과 같다.	제33조(사무 분장) ————— ————— 별표 8—————.

현행

[별표 1]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분원의 명칭 및
위치(제16조의2 관련)

분원명	위치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신 설〉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155

[별표 3]

교육지원청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23조제2항 관련)

도서관명	위치
경상북도교육청 예천도서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중앙로 40-5

〈신 설〉

[별표 7]

사무분장(제31조 관련)

6.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사무분장
1 ~ 8 (생략) 〈신설〉 9. 그 밖에 제15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개정안

[별표 1]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분원의 명칭 및
위치(제16조의2 관련)

분원명	위치
_____ — —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경북 경주시 침성로 97

[별표 3]

교육지원청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23조제2항 관련)

도서관명	위치
_____	— — — — - 40-7

[별표 7]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31조제2항 관련)

수학체험센터명	위 치
경상북도교육청 안동수학체험센터	경북 안동시 풍천면 지풍로 1434-11

[별표 8]

사무분장(제33조 관련)

6.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사무분장
1 ~ 8 (현행과 같음) 9.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운영 1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0.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10.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구분	사무분장	구분	사무분장
교육지원청 도서관장	1 ~ 7 (생략)	—— ——	1 ~ 7 (현행과 같음)
교육지원청 학생수련원 관리소장	1 ~ 5 (생략)	—— —— ——	1 ~ 5 (현행과 같음)
교육지원청 메이커교육 센터장	1 ~ 7 (생략)	—— —— ——	1 ~ 7 (현행과 같음)
교육지원청 안전체험관 관리소장	1 ~ 4 (생략)	—— —— ——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교육 지원청 수학체험 센터장	1. 수학체험센터 시설·설비와 장비 유지관리 2. 수학체험센터 사용허가 및 장비대여 3. 수학체험센터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수학체험활동 자료 제작 보급 5. 수학체험센터 사용자 안전 및 보건 위생 6. 그 밖에 제31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 동 의 안 ＝

-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21. 4. 12)
- 2021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21. 4. 12)
-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도지사('21. 4. 12)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교육감('21. 4. 12)
-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변경 동의안
도지사('20. 9. 22)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가. 추진근거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위탁운영)

나. 필요성

- 행복콜센터 운영에는 상담기술을 가진 전문인력과 상담프로그램 및 통신서브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민간 전문업체 위탁운영을 통해 행·재정적 측면으로 효율을 기하고자 함.
- 도민들의 다양한 민원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원유형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 도모

3. 위탁사무 내용

- 전화민원 상담·안내 및 생활불편 민원 접수에 관한 사항
-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콜센터 상담시스템 임대·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경상북도청 홍익관 4층(경북 안동시 도청대로 455)
- 시설규모 : 134.25m'(40.7평 정도) ※ 연면적 24,759.6m'
- 위탁기간 : 2021. 10. 1. ~ 2024. 9. 30.(3년)

5. 소요예산 : 1,100백만원(2020년 사업기준 3년 소요분)

- 인건비(센터장 1명, 상담사 6명)
- 상담시스템 임차비(콜센터 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
- 통신비용 등(회선 및 인터넷 사용료, 일반전화, 보안장비)

6.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7.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기간 : 2021. 3. 31.(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사전 적정성
- 심의위원 : 10명(당연직 5, 위촉직 5)
- 심의결과 : 적정(정책기획관-4414호, 2021. 4. 5.)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 2021. 4월
2. 일상감사 요청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2021. 6월
3.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1. 7월
4. 제안신청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심사·선정 : 2021. 8월
5.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9월
6. 위탁 운영 : 2021. 10월

2021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2021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 총괄표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수 량	면 적	금 액	비 고
취 득	계	토지	1	11,842	3,100	
		건물	2	9,800	17,900	
		기타				
	1. 매 입	토지	1	11,842	3,100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2	9,800	17,900	2동 신축
		기타				
처 분	계	토지	1	340.2	2,004	
		건물	1	503.86	366	
		기타				
	4. 매 각	토지	1	340.2	2,004	
		건물	1	503.86	366	
		기타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금액은, 법제7조제7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적용 함.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백만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기준 가격	취득시기 (계약방법)	취득사유 및 소유지분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면적)				
계	토지		1(11,842)	3,100			
	건물		2(9,800)	17,900			
	기타						
1	토지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일원	1(11,842)	3,100	'21. 6. (수의 계약)	- 경상북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 - 지분(도 100%)	일자리 경제노동과 (신축)
	건물	(경산 지식 산업지구 4-6, 4-7)	1(8,000)	13,900	'22. 1. ~ (수의 또는 경쟁)		
	기타						
2	토지						
	건물	영천시 금호읍 교수골길 22	1(1,800)	4,000	'21. 10. (경쟁 입찰)	- 감염병분석센터 (연구동) 신축 - 지분(도 100%)	보건환경 연구원 (신축)
	기타						

□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 가격	처분시기 (계약방법)	처분사유 및 소유지분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면적)				
1	토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 (340.2)	2,004	'21.07~ (경쟁 입찰)	- 실라리안 매장 운영 비효율로 매각을 통한 철수 - 지분(도 100%)	중소벤처 기업과 (매각)
	건물	373 (범어동 13-8)	1 (503.86)	366			
	기타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 주요내용

1. 「경북여성가족플라자」 사용료 감면

가. 목 적

- 도청 신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유입되는
도민들의 증가하는 평생교육 요구에 능동적 대응 필요
- 국립안동대학교가 도청 신도시 주민을 위한 우수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코자 함

나. 사용기관 : 국립안동대학교 평생교육원

다. 사용기간 : 2021. 허가일 ~ 2024. 12. 31.

라. 사용방법 : 무상 (※ 연간 감면액 7백만원 정도)

마. 사용대상

사 업 명	건 물 명	준공 시기	소 재 지	사용층 (호실)	전용면적 (공용포함)
국립안동대학교 평생교육 강의실	경북여성 가족플라자 누리관	'20.4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53	4층 (401, 402)	54.14㎡ (97.90㎡)

2.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가. 목 적 :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 상징성이 높은 새마을
운동테마공원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구미시에서 사용허가한 시설물에 대해
도에서 다시 허가하여, 새마을세계화사업 및
공원 운영 활성화 도모

나. 사용기관 : 새마을세계화재단, 경북행복재단(道 출연기관)

다. 사용기간 : 2021. 허가일 ~ 2026. 3. 31. ※ 5년마다 갱신

라. 사용방법: 무상 (※ 연간 감면액 41백만원 정도)

마. 사용대상

사 업 명	건 물 명	준공 시기	소 재 지	사용층	건축연면적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글로벌관	'17. 12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원	2층	989.63㎡
				3층	1,102.58㎡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

□ 주요내용

1. 사업명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2. 위탁 기간 : 2020. 4. ~ 2022. 3.(2년)
3. 위탁 대상 : 영남대학교의료원
4. 사업비 : 9억(변경 전) → 9억 6,130만원(변경 후)
5. 사업 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가. 자살(시도) 및 자해 등 위기 학생
 - 나. 자살 사망으로 위기가 발생한 학교
 - 다. 학교 적응 및 마음건강 상태 어려움이 발견된 학생
6. 사업 내용
 - 가. 학교(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방문 맞춤형 위기관리
 - 나. 학교 역량 강화 및 마음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 다. 전문 인력 학교 위기개입 역량 강화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

□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추진 필요성

- 도립자연휴양림의 전문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한 가동율 제고와 운영수지 개선 및 관광활성화 도모
- 탄력적인 노무관리와 인력운용으로 경제적 손실 극복 및 서비스 차별화 시도

3. 위탁사무 내용 : 도립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전반

- 휴양림 이용료의 징수(산림휴양법 제21조의5)
- 휴양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항)
- 시설물의 유지·관리(건축물, 전기, 통신, 상하수도, 조경 등)
- 휴양림의 운영관리(예약, 매표, 환경정비, 이용객관리, 홍보 마케팅 등)
- 기타 도지사가 요구하는 휴양림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4. 위탁시설 개요

구 분	안동호반자연휴양림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위 치	안동시 도산면 월천길 18	칠곡군 가산면 가산로 323
운영인력 (35명)	22명(일반직 4, 공무원직 8, 기간제 10)	13명(일반직 2, 공무원직 3, 기간제 8)
숙박인원	258명 (16동 29실)	216명 (14동 31실)
시설규모	25개동 연면적 6,920㎡	19개동 연면적 2,948㎡
숙박시설	전통가옥, 숲속의집, 호반하우스 등	휴양관, 숲속의집, 카라반 등
교육시설	산림교육관(대회의실), 세미나실	교육관(강당)
체험시설	치유관, 체험학습관	광산동굴
부대시설	다목적구장, 족구장, 공원, 산책로 등	야영장, 다목적구장, 공원, 산책로 등

5. 민간위탁 기간

- 위탁기간 : 2021. 7. ~ 2024. 6.(3년간)

6. 수탁자 선정방식

- 수탁자 선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8호 사목

- 수탁기관 :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최초 위탁금은 최근 3년간 평균손실액(1,054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손 실 액
계	780	1,834	1,054
안 동 호 반	370	1,086	716
팔공산금화	410	748	338

- 위탁 후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기관 직접사용방식 적용
- 매년 정산후 초과수익은 위·수탁자 공동 배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평균수입액 이상 : 공동배분(익년도 위탁금 조정)▪ 3년 평균수입액 미만 : 위탁기관 부담 |
|--|

8. 경상북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기간 : 2020. 9. 14.(월) ~ 9. 15.(화) / 2일간

○ 심의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사전 적정성
- 수탁기관 및 수의계약 적정성

○ 심의결과 : 심의위원(11명) 전원 적정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 2020. 2 ~ 6월 : 자연휴양림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2. 2020. 6월 :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위탁조항 신설)
3. 2020. 9월 :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4. 2021. 5 ~ 6월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업무인수·인계
5. 2021. 7월 :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1. 4. 28.

제 안 자 : 문화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현재의 시점에 변경된 상황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라. 위탁시설 개요에서 “운영인력 34명”을 “운영인력 35명”으로, “12명(일반직 2, 공무직 4, 기간제 6)”을 “13명(일반직 2, 공무직 3, 기간제 8)”으로, “17개동 연면적 2,845㎡”를 “19개동 연면적 2,948㎡”으로 수정함.

마. 민간위탁 기간에서 위탁기간을 “2021. 1. ~ 2023. 12.(3년간)”을 “2021. 7. ~ 2024. 6.(3년간)”으로 수정함.

3.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2020. 11~12월”을 “2021. 5 ~ 6월”로, “2021. 1월”을 “2021. 7월”로 수정함.

3. 수 정 안 : 붙임

4. 수정안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 위탁시설 개요에서 “운영인력 34명”을 “운영인력 35명”으로 하고, “12명(일반직2, 공무원4, 기간제6)”을 “13명(일반직 2, 공무원3, 기간제8)”으로 하며, “17개동 연면적 2,845㎡”를 “19개동 연면적 2,948㎡”으로 수정함.

마. 민간위탁 기간에서 위탁기간을 “2021. 1. ~ 2023. 12.(3년간)”을 “2021. 7. ~ 2024. 6.(3년간)”으로 수정함.

3.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2020. 11~12월”을 “2021. 5 ~ 6월”로, “2021. 1월”을 “2021. 7월”로 수정함.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비고
라. 위탁시설의 개요 ○ <u>운영인력(34명)</u> ○ <u>12명(일반직 2, 공무원직 4, 기간제 6)</u> ○ <u>17개동 연면적 2,845㎡</u> 마. 민간위탁 기간 ○ <u>위탁기간 : 2021. 1. ~ 2023. 12.(3년간)</u> 3.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u>2020. 11 ~ 12월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업무인수·인계</u> ○ <u>2021. 1월 : 도립자연휴양림 위탁 운영</u>	라. 위탁시설의 개요 ○ <u>운영인력(35명)</u> ○ <u>13명(일반직 2, 공무원직 3, 기간제 8)</u> ○ <u>19개동 연면적 2,948㎡</u> 마. 민간위탁 기간 ○ <u>위탁기간 : 2021. 7. ~ 2024. 6.(3년간)</u> 3.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u>2021. 5 ~ 6월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업무인수·인계</u> ○ <u>2021. 7월 : 도립자연휴양림 위탁 운영</u>	

㉔ 결 의 안 ㉔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준우 의원('21. 5. 3)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5월 6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출석요구 일시

- 2021. 6. 10.(목) 13:40(1차 본회의)
- 2021. 6. 11.(금) 14:00(2차 본회의)
- 2021. 6. 25.(금) 11:00(3차 본회의)

☐ 출석범위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

☐ 출석장소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 주요내용 :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도정질문 등 답변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2조, 「경상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경상북도의회의회의규칙」 제73조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323회 임시회)



2021. 6. 인쇄 / 2021. 6.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비 매 품>